

**ASSOCIATED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정 치

FORM OF GOVERNMENT



정치규정 수정위원회의 수정판

2014년 6월 11일, 총회승인

목 차

1. 교 회	175
2. 교 회 정 치	178
3. 회중 (Congregation)	183
4. 교 인 (The Church Member)	195
5. 집 사 와 집 사 회	202
6. 장 로 와 당 회	206
7. 안 수 식	211
8. 장로와 집사의 선거, 안수 및 임직	213
9. 목 사	221
10 노 회	246
11 미조직(개척) 교회	253
12 총 회	262
13 BOARDS, COMMISSIONS, AND COMMITTEES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 명칭은 모두 위원회로 번역 될수 밖에 없음.)	270
14 규 칙 개 정	276

제 1 장 교 회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 1.1 모든 능력과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¹ 세상권세이든 교회의 권세이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세우신 권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² 세상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해 세우셨으며³,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셨다.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은 이 권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 온전케 하라고 주시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다.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 1.2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과 모든 법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통치를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자이시다.⁶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권세위에 계신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⁹

¹ 마태복음 28:18; 욥기 37:23

² 로마서 13:1-2;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³ 요한복음 19:11

⁴ 요한복음 5:26-27; 17:2; 요한계시록 2:27

⁵ 마태복음 20:25-28; 고린도후서 13:10

⁶ 이사야서 9:6-7;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I.3.

⁷ 요한복음 17:2; 에베소서 1:21

⁸ 요한복음 18:37; 요한계시록 17:14

⁹ 에베소서 1:10,22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하늘 왕국의 은사를 주신다.¹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사역의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

- 1.3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¹¹ 교회사역을 위한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주시는 인도자이시다.¹² 교회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명예롭고 질서있게,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¹³ 성령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사역에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 사역에 합당한 위치에서 교회권세를 행사하게 하신다.¹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복음사역 현장에서 나타난다.¹⁵

교회의 본질

- 1.4 성경은 오직 한가지의 교회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한다. 이런 교회만이 시대가 흘러가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인바, 이런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이다.
- 1.5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 여러 교파, 교단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열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의식을 지키는 한, 모든 교회들은 분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참된 한 교회의 가지들과 같은 것이다.

¹⁰ 로마서 12:6-8; 마태복음 16:19;18:18.

¹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 신앙고백, I. ???

¹² 요한복음 14:26; 16:13.

¹³ 고린도전서 14:40.

¹⁴ 로마서 1:1.

¹⁵ 마가복음 13:11; 베드로후서 1:21.

- 1.6 신약시대 교회의 사역, 법, 예배,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세우셨거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신 선물로 세워졌거나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추론하여 그에 일치하도록 세워졌다.

교회의 사명과 메시지

- 1.7 교회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증언, 가르침, 성례, 예배와 공동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 1.8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공적, 효과적으로 세상에서¹⁶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 1.9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화목에 대한 메시지이다. 고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¹⁷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되도록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 1.10 총회는 교회의 사명과 메시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필요시,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투표를 통해 3분지 2의 찬성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간결명료한 설명을 채택하고 출판할 수 있다.

¹⁶ 로마서 5:5

¹⁷ 고린도후서 5:19

제 2 장 교 회 정 치

교회정치의 필요

개요 - 교회정치의 필요성

- 2.1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례와 규례들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정의된 정치가 이런 안내와 지도를 이루어 준다.¹³ 정치를 위해 필요한 2가지(지도와 권한)에 대한 정의는 ARP의 정치¹⁹(Form of Government)에 잘 나타나 있다.
- 2.2 성경은 교회정치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지 않지만, ARPC가 채택한 장로정치제도는 신구약 성경에 일치하며, 신구약성경에²⁰ 근거하고 있다. 장로정치는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치리회를²¹ 통해 행하는 정치제도이다.

장로교의 정치제도 - 역사적배경

- 2.3 장로교 정치제도는 1542년 Geneva에서 John Calvin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스코트랜드의 John Knox 등, 여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Calvin 에게서 배우며, 장로정치제도에 점점 동의하게 되었다. Konx 는 1560년, Scotland 에 돌아가서 Scotland 교회들을 위해 장로정치제도를 채택한 1차 “권징조례”를 만들었으며,

¹³ 고린도전서 14:40; 골로새서 2:5,

¹⁹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7. 128.

²⁰ 출애굽기 18:13-26; 디도서 1:5; 베드로전서 5:1-5.

²¹ 디모데전서 4:14; 사도행전 15:1-2, 22-29.

이는 나중에 교단이름은 달라도 개혁주의에 뿌리를 둔 모든 Scotland 교회의 정치체도의 기본이 되었다. 1581년, Andrew Melville 이 만든 “2차 권징조례”가 비준되었고, 이는 현재의 장로정치제도에 더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다.

- 2.4 1643년 London에서 개최된 “Westminster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장로교정치제도”를 만들어 추가했으며, 이는 그 후, 영국, 아일랜드, 스코트랜드에서 채택되었다. Associate 교단(1733년) 과 Reformed 장로교단(1743년) 도 이를 각각 자기 교단의 교회법의 기본으로 고수했으며, 후일 미국으로 올 때도, 이를 가지고 왔다. 1782년 11월1일, 두 교단이 미국, 필리델피아 에서 연합할 때, 공예배와 교회 정책에 대한 사항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정치제도는 Westminster 회의에서 정한 제도를 채택했다.
- 2.5 1799년, 교회정치규정집은 수정을 거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요리문답, 권징조례, 모범예배(공식,비공식예배)안내, 기타 부록들과 같이 헌법전집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1822년, 남부의 교회들이 본 교단에서 분리, 독립교단이 된 후도, 계속 이 교회정치규정을 사용했으며, 이는 1903년, 교회에서의 악기사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겨, 수정안을 채택, 1908년 출판할 때까지 사용됐다. 1929년,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34년에 추가수정을 하여 채택한 후, 1937년에 처음으로 출판 되었다. 1949년, 추가수정결정에 따라 1953년, ”Constitution-헌법“이 탄생했다. 1965년, ”교회정치“의 2차 수정본 결정이 있었고, 1971년에 채택되었다.

- 2.6 현재 사용하는 “교회정치”는 2006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 2014년 6월에 채택되었다.

교회정치의 목적

- 2.7 교회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영적분위기를 조성하고, 맡겨진 신성한 영적사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교회 내에 질서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다. 교회 내의 징계기관도 역시 교회 내에서 질서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구성 된 것이다.
- 2.8 교회정치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대한 빈틈 없는 책임의식과 성도의 사랑이란 정신에 입각해서 시행해야 한다.

교회 내의 여러 직분

- 2.9 하나님께서 말씀(성경)을 통해 교회의 정치, 징계, 지도를 위해 3가지의 항존직분을 세우셨다. 이 3 직분은 목사,²² 장로,²³ 집사²⁴ 이다.

²² 1782년11월1일의 Associate Reformed 총회록 12페이지.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장로교회정치제도 참조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 중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도, 전도자, 선지자 같은 특별한 직분이 있다. 다른 일반적인 항존직분은 목사, 교사, 기타 교회관리자, 집사이다.

²³ 장로교정치조직의 역사에서 종종 “교회관리자”로 불리는 직분에 대해서는 앞의 주석을 참조 한다.

3심제도의 치리회를 통해 다수의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는 장로교회의 정치제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정치에 가장 가까운 정치제도이다.

- 2.10 목사나 장로는 함께 장로로서 교회치리회를 섬긴다. 직분의 명칭은 다르지만 교회치리회에서는 장로로서 동등한²⁵ 발언권과 권한을 갖는다.
- 2.11 언급된 직분자가 될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직분자로 부르신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직분도 그리스도와 교회를²⁶ 위해 일하는 것이란 열심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사람은 이 직분을 말지 말아야 한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분을 계속 맡을지의 여부를 해당 치리회와 상의해야 한다.
- 2.12 교회의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서로 돕고 보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 중 어떤 직분을 다른 직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직분이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분들 사이에 계급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도 안 된다.

헌 법

- 2.13 ARPC 교단의 헌법구성은 아래와 같다 :

²⁴ Diakonia. 성경은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섬김을 본받는 직분이라고 말한다.

²⁵ Parity(동등) 는, 치리회 내에서 인원수의 동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분이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²⁶ 디모테전서 4:14;베드로전서 5:1-3;골로새서 4:17

- A.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 B. 대요리문답
- C. 소요리문답
- D. 정치
- E. 권징조례
- F. 모범예배

제 3 장

교 회 (The Congregation)

조직교회의 정의와 목적

- 3.1 회중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배와 주어진 사명을 위해 , 그리고, 교회정치에 동의하여, 해야 할 일을 위해 필요한 일군을 선택하고 안수하는 일을 위해 모인 성도의 조직체를 말한다.
- 3.2 회중의 목표는 함께 모여 단체로 예배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 받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며, 성도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기타 사역

- 3.3 노회와 당회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탐사하여 우선 교회 부속으로 “예배처”를 세울 수 있다.²⁷
 - A. 이 곳에서 ARPC의 Standards 를 따라 모여 단체로 예배를 하고 성례를 행한다.
 - B. 예배처는 아직 탐사단계의 사역이므로 교인명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
 - C. 당회가 노회에 Mission Status(개척교회) 청원을 할 필요 없다.

²⁷ ARPC는 이 곳을 과거에는 “Preaching Station(설교처)”라고 불렀으며, 이는 현재 교회로 세워져 있거나 교회가 될 의도 없이, 단지 정기적으로 모여 단체로 예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Preaching Station” 과 ”Chapel”이란 두 단어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회중의 구성

- 3.4 회중은 목사, 필요한 수만큼의 장로, 집사, 성도들로 구성된다.
- 3.5 목사의 직은 공식적인 교회(회중)의 구성요소를 갖추기 위한 필수요소는 아니다.
- 3.6 회중의 회원은 세례교인과 비세례교인으로 이루어진다.
- 3.7 회중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고 바람직한 부서를 세운다. 각 부서는 당회와 회중에게 책임을 진다.
- 3.8 회중은 세례교인 중에서 부서의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책임자들의 임기는 일 년이며, 다시 일 년을 연임할 수 있다.
- 3.9 회중은 세례교인 중에서 1인 혹은 1인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선출 할 수 있다.
 - A. 회계의 임기는 일 년이며, 다시 일 년을 연임할 수 있다.
 - B. 회계가 집사가 아니라 집사회의 회원이 못 된 경우에는 자문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 C. 회계는 모든 지출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집사회와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 3.10 ARPC 는 장로제도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민법에 의해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당회원들이 교회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 3.11 교회재산의 등기소유권은 교회재산이 속한 관할 법원의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이름으로 된 교회나 이사회가 갖는다.

회중은 민법규정에 따라, 그 재산 사용이 교회가 노회나 총회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사회를 이룸이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법인명으로 재산소유권을 가진다.

- A. 회중(교회)이 소속 지역 민사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체이면, 법인설립 목적과 정관은 반드시 ARPC의 정치(Form of Government)와 일치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세례교인은 법인체의 회원이 되며, 회원들 중에서 책임 직원들을 선출한다.
 - B. 회중(교회)이 법인체가 아닌 경우는, 회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비법인 이사회를 선출한다.
 - C. 법인체이든 비법인 이사회이든 직분을 맡은 책임자는 :
 - (1) 교회가 소유한 재산등기소유권을 가지며 회중(교회)을 대표하여 재산매각, 구입, 대여, 융자 등의 업무를 행한다.
 - (2) 부동산 등기서를 받아 행사한다.
 - (3) 부동산 등기서를 보관, 관리한다.
 - (4) 교회발전을 위해 맡겨진 기금을 관리한다.
 - D. 법인체나 비법인체나, 직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당회와 집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3.12 조직교회(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재산관리는 아래와 같다:
- A. 개 교회가 위치한 곳에 있는 교회 소속의 사택, 성전, 교육관, 주차장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지출하는 교회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융자, 양도, 임대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B. 기타 부동산은 개 교회가 노회의 승인없이 소유권을 가지며 회중의 요청만으로 용자, 유지, 양도 임대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 C. 그 외 다른 모든 부동산(개인부동산)은 개 교회가 관리한다.

3.13 교회의 교단 탈퇴 및 재산관계 :

- A. 교회가 공동회의투표에서 재적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한 경우, 당회는 이를 서면으로 다음 정기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 B. 보고를 받은 노회는 다음 정기노회에서 위원회(Commission)①를 조직하여, 상담, 권고, 조정을 통해 해당교회와 화해를 이루거나, 부득이 떠나는 경우는 절차를 따라 평화롭게 교단을 떠나도록 한다.
- C. 위원회가 교회탈퇴가 최선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교회는 노회가 교회로부터 탈퇴결정보고서를 접수하고 1년 후 재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① committee 나 commission :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위원회로 번역되지만, 그 차이는 committee 는 맡겨진 사명을 노회에 보고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commission 은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일정권한을 부여받는다.

- D. 재적교인 2/3 이상이 교단탈퇴에 찬성하면, 당회는 이를 확인 후, 노회에 보고하며, 노회는 정기노회에서 교회의 교단탈퇴를 허락한다.
 - E. 교회의 교단 탈퇴 시, 노회는 그 교회의 재산 중 노회가 관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들에 따라 공정히 조정, 해결한다.
 - (1) 교회가 노회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나 기타 책임부분
 - (2) 과거에 노회나 총회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 (3)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의 비율(%)
 - F. 특별히, 교회가 탈퇴해도 ARPC 에 남아 있기 원하는 교인의 규모가 교회를 지속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경우, 떠나는 교회나 노회 양측 모두 이들에 대해 재정적, 신앙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노회는 그 교회의 재산을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 G. 탈퇴하는 교회가 상기에 기술한 모든 탈퇴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등을 소속노회에 몰수당한다.
- 3.14 교회가 그 이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회 서기는 교회의 새 이름을 노회기록에 남기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회합병 (2 개 이상의 ARPC 교회의 합병)

- 3.15 2 개 이상의 교회가 합병을 원할 때, 해당교회의 당회는 소속노회에 합병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A. 2 개 이상의 교회합병청원은 해당교회의 당회 혹은 교회가 속한 노회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그 교회의 회중들이 할 수 있다.
 - B. 해당 교회들은 각각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 교회 합병에 대해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 승인 받아야 한다.
 - C. 해당 교회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교회가 다른 노회 소속인 경우에는 모든 소속 노회로부터 합병승인을 받아야 한다.
 - D. 교회합병을 청원한 교회들이 미조직교회인 경우, 노회는 합병결과에 따르는 교회의 유익을 최대한으로 고려, 합병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3.16 노회는 2 개 이상의 교회가 합병하려 할 때, 교회의 최대 유익을 위해 합병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A. 2 개 이상의 교회합병이 유익을 가져 오는 경우, 노회는 합병승인을 시행해야 한다.

- B. 합병을 승인한 후, 노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노회는 이 공동의회를 감독한다.
 - (2) 교인들이 교회의 일원 됨을 선서 혹은 재선서를 하면 교인명부를 작성한다.
 - (3)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한다.
 - (4) 담임목사 청빙투표를 시행한다.
 - C. 공동회의 후에는, 일시를 정해 교회합병예배를 한다.
 - (1) 노회가 합병예배를 주관한다;
 - (2) 노회는 합병예배에서 2 개 이상의 해당교회들의 합병을 공포한다.
 - (3) 사후 노회승인 받는 것을 전제로, 합병예배에서 담임목사의 취임(위임)식을 행한다.
- 3.17 교회합병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2 개 이상의 해당 교회들을 격려하거나 합병관계를 지도한다.
- A. 합병하는 교회들이 각각 소속 된 노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노회는 합병담당 위원회를 만들어 합병을 시행한다.

- B. 합병담당위원회는 합병예배를 총괄한다.
- (1) 위원회는 합병예배에서 2 개 이상의 교회가 노회 승인을 받아 합병됐음을 선포한다.
 - (2) 합병예배에서 위원회는 공동회의를 갖고 당회원이 될 장로선출을 총괄한다.
 - (3) 합병예배에서 새로 구성된 당회가 할 첫 번째 일은 합병승인시 노회에 약속한 대로 초대 담임목사를 청빙, 노회에 보고, 승인 받는 것이다.

- 3.18 노회는 부동산관계, 목회자관계, 직원관계, 사역관계와 교인관계에 대해 자문역할을 한다.
- 3.19 모든 부동산, 자산, 채무는 합병 된 교회의 소유가 되며, 합병하고 새로 조직된 당회의 관리를 받는다.

교회와의 기타 관계 형성절차

- 3.20 노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되면, 한 목사를 2 개 이상의 교회의 목사로 연결시킨다. 이 때 교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노회의 결정사항이다.

교회 폐쇄 절차

- 3.21 교회폐쇄결정은 노회의 권한이다. 교인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교회가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하기 힘들 형편이 되거나, 기타 사유로 교인이나 교회를 위해 교회폐쇄가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노회는 공식으로 교회폐쇄를 선포한다.

- 3.22 노회는 남아 있던 교인이 새로 옮기는 교회로부터 이명서요청을 받았을 때, 서기에게 이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다. 이명서는 교회를 옮기는 교인에게 전하지 않고, 직접 새로 옮기는 교회로 발송한다.
- 3.23 노회의 교회폐쇄 결정 즉시, 모든 재산과 채무는 노회가 책임 지게 되며, 노회 내규에 따라 다루어진다.

공동의회

- 3.24 공동의회는 목사, 당회, 집사회 혹은 교회의 상급치리회에게 맡겨진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영적, 현실적으로 해결한다. 공동의회에서 행하는 일은 하기와 같은 일이지만, 이 일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 A. 담임목사 및 Associate 목사의 선출과 청빙.
 - B. 장로, 집사(공동의회에서 정해진 인원대로), 공동의회 담당 직분자들.
 - C. 그 외 아직 명시 돼 있지 않은 교회의 기타 절차들에 대한 결정.
 - D. 집사회가 작성 한 후, 당회가 승인, 현의한 예산안 채택.

- E. 교회건축이나 수리비 승인.
 - F. 직원의 인건비 결정.
 - G. 부동산 구입 및 매각.
- 3.25 공동의회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A.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에 의해 소집된다.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서를 보내 소집하며, 노회원 중 하나를 공동의회 사회자로 임명한다.
 - B. 모든 공동의회 통지서는 최소 회의 일주일전까지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담임목사 혹은 당회장(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Associate 목사, 당회, 교인들 그리고 회의 사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서는 규정에 따르는 정상적인 공동의회를 할 수 없다.
 - C. 정기 공동의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한다. 기타 특별한 일을 위한 공동의회는 통지서에 안건을 기재하여 소집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 D.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끝내지 못한 경우 Adjourned meeting① 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경우는 Adjourned meeting 을 위한 통지서를 필요로 한다. 전자의 경우(안건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회의가 끝나고 2주 이내에 다음 Adjourned meeting 을 가져야 한다.

(* 註① : Adjourned meeting 이란 연장회의란 뜻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 다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 (1) 특별한 미결안건 없이 회의를 끝내는 경우라도, 폐회 전에, 시간 및 장소를 정해 Adjourned meeting을 하기도 하고, (ARPC 노회들이 봄 노회를 마칠 때, 총회 시기인 6월에 노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Adjourned meeting 이 이에 해당한다.)
- (2) 회기 중 처리 못한 미결안건을 해결을 위해, Adjourned meeting 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회의가 끝나고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 E. 회의정족수가 미달 될 때는, 안건처리를 할 수 없다. 회의정족수는 투표권을 가진 세례교인 4분의 1 이상이다. 세례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교회의 경우, 그 회의정족수는 세례 교인의 10분의 1이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참석 세례교인 수가 250 명 이하이면 안 된다.
- F. 징계 중에 있지 않은 무흠입교인과 회의에 출석²⁸한 교인 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G. 투표는 Form of Government(정치)가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구두,거수,기립 혹은 무기명투표 중 하나로 행해진다. 목사청빙의 경우나 논쟁이 있거나 위협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경우는 무기명투표를 한다.
- H. 모든 공동의회시, 공동의회회장 혹은 당회가 임명한 사회자가 회의 사회자가 되며, 당회서기 혹은 당회가 임명한 사람이 서기가 된다.
- I. 모든 회원은 동일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사회자는 모든 회원(세례교인) 들에게 똑같이 투표용지가 배부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 J. 모든 공동의회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 (1) 사회자가 개회선언을 하고, 기도로 시작된다.

²⁸ 사회자는 전자매체를 통한 참석방법을 고려하여 “출석”의 개념을 정하도록 한다.

- (2) 사회자는 회의정족수를 확인하고,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 (3) 지난 번 회의에서 미결 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난 회의록을 낭독 이를 알린다.
- (4) 지난 회의록 낭독 후, 미결 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 (5) 각 위원회는 필요 사항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6) 임시의회인 경우는 임시의회 통지서에 기재 된 안건만 다룬다.
- (7) 폐회 전, 회록을 낭독하고, 채택해야 한다.
- (8) 폐회 동의 및 가결 후, 기도로 회의를 마친다.

제 4 장 교 인

교인의 정의

- 4.1 수찬유자격 교인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를 순종키로 한 교인을 말한다. 이런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권리와 특전을 갖는다;
- A. 공동의회에서의 투표권 행사.
 - B. 규정에 합당한 자격을 갖는 경우, 직분을 맡음.
 - C. 주님의 만찬인 성찬에 참여함.
 - D.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할 수 있음.
- 4.2 수찬무자격 교인은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미성년이거나 수찬유자격 교인의 양육하에 있는 자녀들이다. 이 자녀들은 점차 수찬유자격 교인이 되도록 목회자의 돌봄, 지도, 교회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4.3 준교인은 당분간 교회 부근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지만, 소속 교회로부터 이 쪽 교회로 이명하기는 원치 않는 사람을 말한다.

교인의 의무

- 4.4 교인이 해야 할 일은;
- A.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말씀, 기도)을 의지한다.

- B. 예배와 봉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 C.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의 분량대로 성실히 물질을 바친다.
- D.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
- E. 평안을 유지하며 늘 성도와 교제 한다.
- F. 장로의 권위에 순종한다.
- G. 복음의 성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수찬유자격 교인이 되는 절차

4.5 신앙고백을 하고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영적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당회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

- A. 아래 질문에 동의한 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1)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것을 고백합니까?

(2)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 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접합니까?

(3) 귀하는 신,구약 으로 된 성경을 기록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완전한 규범인 것을 받아들입니까?

(4)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일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주심을 믿고 따르기를 약속합니까?

(5) 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이 이루어지고 번창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약속합니까?

(6) 귀하는 ARPC 헌법의 모든 교리와 신조들이 성경대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7) 귀하는 이 교회의 교인으로 있는 한, 교회의 평안, 순결, 부흥을 위해 사랑의 순종으로 이 교회의 행정과 권징조례를 따르기를 약속합니까?

- B. 신입교인 후보자가 당회에서 질문에 동의하고 서약을 마치면, 수찬유자격교인이 된다. 당회는 이 외의 다른 자격조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 C. 당회는 미성년자나 양육자녀들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다.
- D. 신입교인 후보자가 아직 세례를 받은 적이 없으면 세례를 받은 후, 수찬유자격교인이 된다. 세례는 모범예배, 8.b. 의 규정을 따라 행한다.

- E. 새 교인을 적절히 모든 교인들에게 소개시킨다.
- 4.6 자신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수찬유자격교인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당회에서 다시 신앙고백을 하며, 질문사항은 앞부분(4.5)에 있는 질문들이다. 당회에서 질문에 동의하고 서약을 마치면, 후보자는 수찬유자격교인이 된다.
- A. 과거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3위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면, 3위1체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²⁹
- B. 후보자는 당회의 면접을 거쳐야 하며, 신앙간증을 해야 한다.
- C. 당회는 미성년자나 양육자녀들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 D. 새 교인을 적절히 모든 교인들에게 소개시킨다.
- 4.7 다른 교회로부터 이명 오는 교인의 전입은 단순한 행정적, 사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목회관리, 양육이 따르는 이전이다.
- A. 다른 기독교회의 교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유자격수찬교인으로 영입된다;
- (1) 소속 교회로부터 그 교회의 무흠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당회에 제출한 후;
- (2) 당회면접을 거치며, 이 때 신앙간증을 한다.

²⁹ 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 / 모범예배 8 (1).

- B. 후보자가 무흠교인 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신앙간증이 의문스러운 경우, 동기가 기독교인 답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이명사유에 대해 당회시험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인 후에만 영입 될 수 있다.
 - C. 이명서는 개인을 통하지 않고 떠나온 교회가 이명받는 교회로 직접 보내야 한다.
 - D. 당회는 미성년자나 양육자녀들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 E. 새 교인을 적절히 모든 교인들에게 소개시킨다.
- 4.8 준교인이 되기 원하는 후보자도 이명교인이 되는 같은 기준과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 A. 준교인의 이름을 당회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 B. 준교인은 적절히 교인들에게 소개되며,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를 함께 누리게 된다.
 - C. 준교인은 공동의회에 대한 권리, 특전, 투표권은 가질 수 없다.

다른 교회로 이명 하는 절차

- 4.9 질서 있는 교회행정을 위해, 다른 교회로 이명 가는 교인이 무흠교인 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영입받는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는 무흠교인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는 교인 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영입받는 교회로³⁰ 직접 발송한다.

- 4.10 안수받은 직분자에 대해 발급된 증명서는 이들의 안수사실만 증명,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직분까지 이명 되는 것은 아니다.
- 4.11 부모의 이명증명서에는 미성년자나 양육자녀의 이름이 포함되며, 이들의 세례사실을 명시한다.
- 4.12 증명서에는 당회장이나 당회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4.13 교회가 해체된 경우, 교인의 회원권은 노회서기가 유지하다가 이명 시킨다.
- 4.14 교인이 이명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등록한 사실을 당회가 확실히 확인한 경우, 그 교인의 이름은 교인명부에서 삭제된다.

교인 명부

- 4.15 당회는 아래와 같이 교인명부를 구별해서 작성, 보관하며 매년 검토해야 한다.
 - A. 수찬유자격 교인명부는 당회에 의해 교인이 된 후, 이명하지 않은 교인, 명단삭제되지 않은 교인, 사망하지 않은 교인들의 이름들로 작성된다.
 - B. 수찬무자격 교인명부는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교인, 부모의 양육 하에 있는 교인들의 자녀로서 아직 수찬무자격인 교인들의 이름들로 작성된다.
 - C. 그 외 준교인들의 명부는 별도로 작성된다.

³⁰ 총회의 기독교교육부(The office of Christian Education Ministries)가 만든 이명서 양식이 준비 돼 있다.

- 4.16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당회가 그가 다시 무흠교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까지는 교인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 할 수 없다.
- 4.17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적극적이고 열심이든 교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위해 멀리 가 있거나, 군복무중이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교인들의 이름은 명부에 계속 남아 있다.

제 5 장

집사와 집사회

집사의 직과 그 자격에 대한 설명

- 5.1 집사의 직은 성경이 보여 주듯이 일반적이고 늘 있어 온 교회 내의 직분이다. 이런 집사의 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섬기는 직분이다.
- 5.2 좋은 인격,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형제의 사랑,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 바른 판단력을 가졌으며, 성경에 기록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집사로 선출돼야 한다.
- 5.3 집사는 교회 내에서 무흠한 교인 이라야 하며, 예배와 봉사생활에 적극적이고 열심이며 집사의 사명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이라야 한다.
- 5.4 당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집사회는 교회의 남성교인들로 구성돼야 한다. 여성을 집사로 선출하는가? 하는 일은 개 교회의 당회가 결정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교회는 자격을 갖춘 남성교인들을 선출, 집사회를 구성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³¹ 디모데전서 3:8-13

³² 디모데전서 3:8-13

집사회의 목적

- 5.5 집사회는 교회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나 어려움, 그리고 모든 “구제사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먼저 교회 내 교인들의 필요를 돕고, 그다음 교회 밖의 사람 들을 돕는다.
- 5.6 집사회는 또한 교인 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실천하는 청 지기가 될 것, 특별히 십일조 생활, 믿음의 식구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가 질 것을 격려하며,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 는 것을 알게 한다.
- 5.7 집사회는 당회와 함께 협력하여 교회의 헌금이 사용 될 재정지출계획을 세우며; 그 헌금액을 달성 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며; 그 외 당회나 상급치리회에서 지시한 특별헌금달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 모든 헌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용되도록 한다.
- 5.8 집사회는 부동산, 동산 등 교회의 모든 재산을 보살핀다. 교회의 부동산 매입, 건축, 수리 같은 특별경비지출은 교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5.9 교회는 집사의 사역에 필요한 재능을 갖추고, 집사의 사명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사람을 찾아 집사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집사회의 조직

- 510 각 지교회는 집사들로 구성되는 부서를 조직하는데, 이를 집사회라 하며, 담임목사와 Associate 목사들은 자문이 되고, 공동의회 의 회계가 집사가 아닌 경우는 역시 자문 회원이 된다. 집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 한다. 서기는 집사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그 회록을 빠른 시간에 당회에 제출한다.

- 5.11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책임맡은 공동의회 회계는 집사회의 감사를 받는다. 공동의회 회계가 제출하는 월간회계보고는 집사회의 회록에 첨부된다. 교회재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교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재무감사를 하도록 한다. 감사비용은 교회재정에서 지출되며, 당회록의 일부로 첨부하여, 원하는 교인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외부인사에 의한 재무감사는 매 3년 이내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집사회의 진행

- 5.12 집사회는 통상 월 1회 회의를 갖는다. (아니더라도 최소 년 9회 이상.)
- 5.13 집사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언제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집사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당회가 요청하는 경우, 회장은 집사회의를 소집한다. 적절한 회의소집통지서를 모든 집사회원, 목사들에게 보내야 한다.
- 5.14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교회들이 정하는데, 정기집사회의 정족수는 회원의 2분의 1 이하이면 안 되고, 임시 집사회의 정족수는 4분의 1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 5.15 회의에 직접 참여한 회원 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5.16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당회와의 관계

- 5.17 집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회의 감독과 권한 밑에 있는 부서이다. 교회의 재정예산이나 다른 중요한 재정결정은 공동의회에 제출하기 전,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8 당회는 집사회의 결정을 무효시키거나, 수정, 혹은 다시 검토하도록 반송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5.19 집사회와 당회는 년 1회 재정예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합회의를 가진다.
- 5.20 연합회의 에서는 공식적인 결정은 할 수 없다. 당회와 집사회는 자기 부서에 맡겨진 일을 각각 책임지고 행한다.
- 5.21 교회가 어떤 이유로 집사선출이 불가능한 사정인 경우, 그 업무를 장로들에게 위임한다.

제 6 장 장로와 당회

장로직과 그 자격에 대한 설명

- 6.1 장로의 직은 성경이 보여 주듯이 일반적이고 늘 있어 온 교회 내의 직분이다.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장로를 안수하셨다.
- 6.2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며,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로로 선출돼야 한다.³³
- 6.3 장로는 교회 내에서 무흠한 교인으로서, 예배와 봉사생활에 적극적이고 열심이며 장로의 사명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이라야 한다.
- 6.4 장로의 사명은 개인적으로나 연합해서나 교인들의 영적유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치리장로는 선거에 의해 교인을 대표하지만, 모든 교회치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당회의 목적

- 6.5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회 중 제일 아래에 있는 치리회를 당회라고 부르며, 노회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교회의 당회에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살피고 관리하는 사명이 있다.

당회의 권한과 책임

- 6.6 당회의 주임무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³³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6-9

- 6.7 당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과 행함을 통해 지역사회, 노회, 총회, 그리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체계화 하고 관리한다. 당회는 교회의 모든 일을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회 내에 필요한 부서들과 위원회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6.8 상급치리회의 관리 아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회는 아래의 일들을 해야 한다:
- A. 교인들을 심방, 보살피는데; 특히 환자를 방문하여 기도해 주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루기 힘들고 부주의한 사람을 인도 한다. 그 외 전반적인 모든 임무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행한다.
 - B. 교인들과 상담하며 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행함을 알아본다.
 - C. 교인의 범죄가 발견되면, 권징조례에 따라 권면, 견책, 정직, 수찬정지의 징계를 행한다.
 - D. 수찬유자격 교인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세례 받게 하도록 권면한다.
 - E. 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거나 재신앙고백을 한 사람, 새로이 전입하는 사람을 수찬유자격 교인으로 영입한다.
 - F. 다른 교회로 전출하는 무흠교인이 이명서를 요청할 때, 이를 발급한다.

- G. 교인들이 장로와 집사로 선출한 사람들을 교육, 시험, 안수 및 임직식을 거행한다.
- H. 공동의회의 책임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I. 집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전 회록들을 검사한다.
- J. 교인들을 위한 신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 K. 비안수직 교회 직원을 채용, 관리한다.
- L. 모범예배의 규례를 따라, 설교와 성경교육의 시간과 장소, 성례예식의 진행 그리고 모든 신앙적 행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
- M. 목사 부재시 교인들의 예배모임을 주도한다.
- N. 특별헌금의 조달, 수령, 사용을 지도한다.
- O. 교인들과 교회의 영적발전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격려한다.
- P. 상급치리회의 법적명령을 준수하고 시행한다.
- Q. 장로들 중에서 노회회의와 총회회의에 참석할 총대를 선출한다. 상급회의에 참석한 장로총대에게 한 가지 예외 경우 외에는 투표지시를 받지 않는다. 예외 경우는 교회합병의 경우이다. 이 경우 당회는 당회가 원하는 대로 투표할 것을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총대는 참석했던 회의 내용을 당회에 보고한다.

- R. 교단 전체를 위해 유익이 되는 방안을 건의한다.
 - S. 교회 내의 특별한 부서 설치, 관리, 해체 등을 하며, 재량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요구한다.
 - T.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U. 교회 건물과 부속 건물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6.9 당회는;
- A. 당회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매년 노회에 제출하여 당회록 검사를 받는다.
 - B. 하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보관한다.
 - (1) FOG(헌법의 정치규정)에 따르는 교인명부
 - (2) 세례 받을 교인 명부
 - (3) 교인의 사망과 결혼 기록.
 - C. 상위치리회나 위임기관의 요구시 상기 내용들을 보고한다.

당회의 조직

- 6.10 담임목사는, 그 직책상, 당회의 회장이 된다. Associate 목사가 있는 경우, Associate 목사도 당회원이 된다.
- 6.11 개척교회 목사는, 그 직책상, 교회 임시당회의 당회장이 된다.

- 6.12 당회는 당회장 외에 부당회장, 서기를 매년 선출한다.
- 6.13 목사가 당회회의를 인도할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부당회장이 회의를 인도한다.
- 6.14 교회에 어떤 사유로 인해 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임명하는 ARPC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이렇게 임명된 당회장이 당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당회장이 회의를 인도한다. 법적인 사건에서는,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인도한다.
- 6.15 당회는 통상 월 1회(아니더라도 최소 년 9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갖는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2인 이상의 장로 요청시, 혹은 노회의 요청시 소집한다. 임시당회를 위한 적절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6.16 담임목사에게 알리지 않고는 당회를 할 수 없다.
- 6.17 당회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매 당회시 결정한다. 그러나 1인의 목사와 1인의 장로 이상 혹은 목사 없이는 2인 이상의 장로가 돼야 한다.
- 6.18 투표권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만 갖는다.
- 6.19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 하고 기도로 폐회 한다.

제 7 장 안 수

- 7.1 안수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선출 됐거나 임명 된 직분 혹은 ARPC 의 치리회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을 공식적으로 임직하는 ARPC 의 행사이다. 임직 받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안수식은 무효한 것이다.
- 7.2 장로교제도에서, 안수식은 손을 얹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비록 손을 얹는 것이 안수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익하고 전통적인 ARPC 의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성령님이 이미 역사 하신다는 의미를 가시적, 실제적으로 보이려는 것이지, 능력이 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다는 뜻이 아니다. 더불어, 안수식에서는 안수위원들이 임직자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비는 중보기도를 한다. 이 외 안수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범예배안내서에 기록 돼 있다.³⁴
- 7.3 안수식의 안수위원은 ARPC 교단이나 치리회의 회원이라야 한다; 외부 인사를 부르려면 교단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수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4 안수식은 임직 받은 사람이 징계에 해당하는 일로 적법한 ARPC 치리회로부터 정직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와 사망의 경우 외에는, 영구적인 효력을 가진다.

³⁴ 모범예배, 제5장.C.7.

- 7.5 안수식은 임직자에게 다른 교인보다 위에 있는 어떤 계급이나 지위 상의 차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역할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 7.6 ARPC 의 모든 교회, 치리회, 대행기관들은 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정사역(예, 선교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 임명식은 교회 내에서 행한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임명식의 일부로 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수한 것이 안수임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임명식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모범예배 안내서에 기록 돼 있다.³⁵

³⁵ 모범예배 안내서, 제5장.C.8

제 8 장

장로와 집사의 선거, 안수 및 임직

자 격

- 8.1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A.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받을 교회에서 충실한 신앙 생활을 하며 교회내의 모든 성도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인 ;
 - B. 현재 받은 처벌이 없을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처벌에 관계 되지 않은 교인 ;
 - C. 직분 받는 사람의 연령은 당회에서 정한다 ;
 - D.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서둘러 이런 직분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³⁶
 - E. 하나님께서 직분자들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후보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 (2.11)
- 8.2 교회는 당회원 숫자를 채우거나 제직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자격이 미달된 사람을 뽑기 보다는 소수가 되더라도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 8.3 직분자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과 교육은 당회의 책임이다.

임 기

- 8.4 장로로 그리고 집사로 선출된 후 안수 받은 직분자의 임기는 정계를 받아 면직되는 일이 없는 한, 항존직이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계속 시무하는 항존직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며, 또한 일정기간 봉사하는 장로들과 집사들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임기는 아래와 같다.

³⁶ 디모데전서 3:6,

- 8.5 항존직 당회원이 될 장로나 항존직 집사로 제직회원을 선출한 교회는 또한 일정기간의 임기 동안만 필요한 부서에서 일할 장로나 집사도 선출할 수 있다. 이 순환 직분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그 임기는 공동회의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한다.
- A. 공동회의는 Rotary System (순환제단기직분)에 따라 장로나 집사를 선출할 경우, 그 임기가 3년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 B. 이 제도에 의해 선출된 장로와 집사는 그 임기를 마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같은 직분을 다시 맡을 수 없다.
 - C. 이 제도에 따라 장로직분을 마치고 물러난 장로는 그 후, 제직으로 선출될 수 있다.
- 8.6 Rotary System(순환제단기직분)을 운영하는 교회가 이 제도를 중단하려 할 때는 공동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 8.7 제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 8.8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던 사람이 고령이나 건강상의 형편 혹은 기타 합당하게 여겨지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동회의를 통해, 이런 사람을 명예장로 혹은 명예 집사로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가지의 조건이 있게 된다.
- 첫째 조건은, 본인이 명예직분을 수락해야 하는 것이며
둘째 조건은, 이는 명예직이므로 장로의 경우 ARPC 총회에 총대로 파송 될 수 없으며, 또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출절차

- 8.9 교회를 섬길 장로와 집사를 몇 명을 뽑을지는 교회가 정한다. 장로의 수는 집사의 수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교인수의 변동(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장로와 집사의 수도 신중히 고려하여 조절하도록 한다.

- 8.10 장로와 집사의 선거는 정식절차에 따라 소집된 공동회의에서 행한다.
- 8.11 장로와 집사의 임직은 후보공천, 검증, 그리고 선거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후보가 된 사람은 당회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가졌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교인들 또한 후보자들을 위해 그리고 선거가 잘 진행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후보공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A. 공천부 조직.
- 공천부는 개교회의 당회 혹은 노회가 조직하는데, 늦어도 선거 14일 전까지 공천부를 조직해야 한다. 조직교회인 경우는 교회의 당회자체가 공천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조직교회(밋손교회)인 경우는 노회가 조직한다. 조직교회의 공천부는 후보를 결정하면 그 명단을 당회에 제출한다. 공천부원 중에는 최소 1인 이상의 ARPC 장로가 포함돼야 한다.
- B. 공천부는 교인들에게 후보를 추천하도록 공지한다. 공천부는 교인들이 추천한 사람들 전부나 혹은 일부를 후보로 지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추천된 모든 사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공천부는 교인들이 추천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 권한을 갖고 있다. 공동회의에서 후보추천을 공지하고, 교인들이 누군가를 추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투표를 바로 그 공동회의에서는 하지 않는다.
- C. 후보자 심사.
- 당회 혹은 노회는 추천받은 모든 사람들을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만한 신앙과 자격과 열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된 사람들에게 “안수 및 임직절차규정”(FOG 8.17에 기재된)에 있는 모든 질문사항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다.
- 당회는 이 사람들에게 “The Standard”의 모든 사항을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

다면 그 부분이 후보자가 선거를 포기할 정도인지를 확인한다.

(* “The Standards” 의 Full Name 은 ARPC 총회헌법 표지에 있는 대로, ”THE STANDARDS OF THE ASSOCIATED PRESBYTERIAN CHURCH” 로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FOG(정치), 권징, 모범예배안내서의 6권으로 된 총회헌법 전체를 말한다.)

8.12 투표.

추천받은 사람들이 앞에 기술된 8.11.A-C 의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되면,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는데,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최소한 1주일의 지나서 투표해야 한다.

* 후보가 한 사람뿐인 경우에는 후보의 이름을 알린 후, 구두, 거수, 혹은 기립의 방법으로 가부를 물어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으나, 무기명투표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 후보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이 때, 공동회의는 과반수이상 득표를 당선기준으로 할 것인지, 과반수가 안 되도 다수결 방식에 의해 후보자들 중 최다득표자 순서로 선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다득표자 순서로 선출해야 한다.

A. 과반수득표 이상으로 정한 경우 :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2차 투표에서는 선출하려고 하는 인원의 2배 까지의 후보 이름만 투표용지에 적을 수 있다.

B. 최다득표자 순서로 선출하기로 정한 경우 :

선출된 후보 중, 사양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차점득표자가 대신 선출된다.

8.13 무기명투표를 하는 경우,

* 당회는 투표용지를 준비 한 후,

* 평소 헌신적인 교인 3인 이상의 선거위원을 임명하여,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후,

- * 선거위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며
- * 선거위원들은 회수한 투표지를 계수한 후, ALPHABET 순서를 따라 당선자를 발표한다. 이 때, 당선자들의 득표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발표 후에는 투표지를 폐기처분한다.

8.14 당회는 선거 후, 빠른 시간 내에 당선자들의 안수(안수가 필요한 선출직이 있는 경우) 및 임직 혹은 재임직(이전에 그 직분에 선출돼 봉사했던 사람인 경우) 일자를 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안수 및 임직

8.15 장로와 집사의 안수 및 임직식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인도(사회)한다. 교회의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임명한 임시당회장이나 다른 ARPC 소속목사가 인도하며 혹은 노회의 승인을 받은 타교단 목사가 인도할 수도 있다.

8.16 안수 및 임직식 때, 선출된 임직자들은 모든 교인들 앞에서, ARPC 의 모든 교리, 정치, 권징, 그리고 모범예배를 준수할 것을 하기(8.17)에 기술 된 서약문을 따라 엄숙히 선서한다.

8.17 안수 및 임직 서약문

- (1) 귀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위1체 한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의 구주이시라는 것과 몸된 교회의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합니까?
- (2) 귀하는 신구약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믿음과 삶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규례이며, 그 모든 가르침에 잘못 된 것이 없으며, 원본 성경 역시 하나의 오류도 없으므로, 영원토록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 (3)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기술된 교회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동시에 귀하 자신의 믿음이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까?
- (4) 귀하는 ARPC 교단의 정치, 권징조례, 모범예배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 (5) 귀하는 이 교회의 장로(집사)가 되어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교회와 세상 앞에서 약속합니까?
- (6) 귀하는 사랑 안에서 교회의 당회 권위, 그리고 교회의 상회기관(노회, 총회)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 (7) 귀하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하나 됨, 화평, 순결,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까?
- 8.18 위의 서약확인이 끝나면, 인도자는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 다음을 질문, 확인 한다:

“ 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장로(집사)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 교단의 헌법(Standard of this Church)을 따라, 사랑 가운데 이 사람들의 직분에 합당한 존경, 순종, 격려로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 8.19 모든 성도들이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직분자들이 무릎을 꿇으면, 기도 하는 가운데, 당회원들은 이 직분자들을 안수한다.
- 8.20 안수 기도 후, 인도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여러 분은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 받고 임직 받아 ARPC의 성스러운 장로(집사)가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당회원들은 새로 임직받은 사람(들)의 손을 함께 잡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하며 환영한다.

재 임 직

- 8.21 Rotary System(순환제단기직분제)의 임기를 마치고, 같은 직분에 다시 선출된 장로나 집사는 재안수 없이 재임직 된다.
- 8.22 ARPC 내의 다른 교회의 장로나 집사인 사람이 이명 온 후, 같은 직분에 선출된 경우는 재안수 없이 임직된다. 그러나 당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고백을 해야 하며, 처음 안수 받은 이후, 지금까지 ARPC의 Standard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 “The Standards”의 Full Name은 ARPC 총회헌법 표지에 있는 대로, “THE STANDARDS OF THE ASSOCIATED PRESBYTERIAN CHURCH”로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FOG(정치), 권징, 모범예배안내서의 6권으로 된 총회헌법 전체를 말한다.)
- 8.23 재임명 받는 임직자의 경우는, 안수 및 임직 서약문 전부가 아니고, 5번에서 7번 까지의 사항만 지킬 것을 서약하며, 서약 후, 인도목사는 이들이 정식으로 임직됐음을 공포한다.

- 8.24 타 교단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나 집사가 같은 직분의 후보로 추천되면 이 사람(들)은 당회의 개별심사 과정 시와 그 후 임직식 에서도 안수 및 임직에 따르는 선서문의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에 섬기던 교회나 노회, 혹은 총회 어느 쪽에도 진행 중인 징계 사항이 없어야 한다.

기 록 및 보 고

- 8.25 안수식과 임직식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당회록에 보관해야 하며 임직자들 명단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9 장

목 사

목사의 직분 과 자격

- 9.1 목사는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따로 구별되어 ARPC 의 목사로 세워진다.
- 9.2 목사로서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가?를 확인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일군들을 목사가 되도록 다듬고 준비시키시므로, 소명받은 사람은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목사가 되기에 충분히 준비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9.3 목사의 사역은 교사와 지도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합당한 은사를 갖추고, 목사로서의 인격과 평판을 계속 명예롭게 지키는 사람 됨을 조건으로 한다.
- A. 목회자로서의 영성.
목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려야 한다.
- B. 목회자로서의 신념.
목사는 ARPC 의 교리, 정치, 모범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것임을 믿고, 받아 들여야 한다.
- C. 목회자로서의 지성.
목사는 성경과 ARPC 의 교리, 정치, 모범예배 그리고 목사의 사명을 알고 숙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D. 목회자로서의 마음 자세.
목사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E. 목회자로서의 인품.
목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하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 F. 목회자로서의 지성.
목사는 목사로 안수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요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한다.
- G. 목회자로서 필요한 교육 수준.
목사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 * 인가받은 4년제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증이나 동등한 학위,
 - * 인가받은 신학교 그리고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받은 목회학석사학위증(M.Div) 이다.
 (노회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증이나 목회학석사학위증 제출을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노회 전에 서면으로 이를 노회에 보고, 신청해야 한다.)

9.4 성경이 목사들 사이에 어떤 계급적인 차이나 권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듯이, 모든 목사들은 그 직분이나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다. 목사, 교사, 감독, 장로라는 호칭은 그 말은 임무와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불렸을 뿐이다.

(bishop : 기독교(개신교) 에서는 감독을 말하는 것이며,
presbyter : 초대 교회 때의 장로를 말한다.)

9.5 목사의 직분에는 장로의 직책과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장로라고도 부른다.

목사의 사명

9.6 한 교회의 담임목사(혹은 부목사) 로 사역하는 경우 :

- A. 공식적사명
 - *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한다.
 - * 성경말씀을 읽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설교)하고 가르친다.
 - * 교인들을 훈계, 권면, 위로한다.

- *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성례, 결혼예식, 장례예식을 집례한다.
- * 장로들과 함께 교회와 교인들에 관계된 모든 행정 (Government), 권징, 예배, 교육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 교회 내 모든 부서의 고문이 된다.
- * 장로들과 함께 교회치리회의 구성원이 된다.

B. 비공식적사명

- * 교인들의 목사로서 심방하고, 영적인 일들을 상담, 지도하며
- *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 * 특별히 병든 교인, 고난 중에 있는 교인, 노인들을 심방하며, 이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 이 사람들을 위해 조언, 위로, 기도한다.
- * 비기독교인 다운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과 성도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인 의무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책망한다.
- * 이밖에 교인들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살피고 지도한다.

9.7 학교계통에서 교수로 사역하는 경우 :

- A.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와 자격이 있는 목사의 경우, 목사본연의 사명을 벗어나지 않고 연관된 사역이라면, 노회 지역 밖에서의 사역으로 노회의 승인을 받아 신학교, 대학교, 기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
- B. 목사는 교사일 뿐 아니라 또한 목회자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목회자로 보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 해야 한다.

9.8 복음전도자로 사역하는 경우 :

- A. 노회의 무흠회원인 목사는 복음전도자의 사역을 할 수 있다.
- B. 노회가 허락하는 경우, 사역현장에서 설교, 성례집례, 그리고 목사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 사역지의 책임자의 지도와 관리 아래 오직 설교와 말씀 사역만 수행한다.

- 9.9 선교사로 사역하는 경우 :
- A.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목사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
 - B. 선교사가 된 목사는 선교현지에서 담임목사로서 뿐 아니라, 교사 그리고 복음전도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 C. 선교사는 선교현장에 노회가 아직 조직 돼 있지 않은 경우, 총회의 지도하에 노회처럼
 - * 교회를 조직하는 일 * 신학생 입학, 교육, 안수 및 임직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모든 일들을 ARPC Standard 에 따라 행해야 한다.
- 9.10 교회개척 사역을 하는 경우 :
- A. 노회는 목사에게 교회개척사명을 부여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할 수 있다.
 - B. 교회개척사명을 받은 목사의 최종목표는 교회를 개척한 후, 이 교회를 조직교회(당회가 조직된)로 만드는 것이다.
 - C.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그 교회 교인들의 담임목사가 된다.
 - D.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그 교회 임시당회의 당회장이 된다.

- E.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교인들을 훈련시켜, 자격을 갖춘 장로로 양성하여 교회를 조직교회로 만들도록 한다.
- 9.11 Bi-vocational 담임목사 (목사 외에 다른 직업, 즉 2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 혹은 Part-time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는 경우 :
- A. 목사는 노회가 허락 하면 다른 직업을 유지하면서,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 B. Bi-vocational 담임목사는 목회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노회에 제출한 시간계획표대로 목회와 직장생활을 위한 시간을 잘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 C. 노회는 Bi-vocational 담임목사와 Part time 담임목사가 보험 및 연금혜택 관계에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회나 해당목사 모두 총회 “Board of Benefits(은급부)”의 보험 및 은퇴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이해해야 한다.
- 9.12 기관목사로 사역하는 경우 :
- A.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군목이나 기타 기관(병원, 학교, 교도소)의 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
 - B. 기관목사로 사역하는 목사도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를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듯이, 기관사역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기관목사는 자기가 맡은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부분은 그 기관의 관리계통을 따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속노회의 관리 아래 있다.
 - C. 기관목사는 노회가 허락한 대로 말씀을 선포(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사역현장에서 목회자가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경우, 담임목회자 처럼 그 사역을 수행한다.
 - D. 기관목사는 자기가 사역하는 기관의 규정이 ARPC 교단의 Standard 와 다를 때는 ARPC 교단의 Standard 를 우선하여 따른다.

- 9.13 이외 기타 분야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경우 :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다양해서 상기에 기록한 외에도 많은 사역이 있으므로, 목사가 상기에 기록한 외의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땅하다. 안수받은 목사가 통상적인 목회사역분야가 아닌 이런 사역을 원하는 경우, 노회지역 외부의 사역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매년 “년간사역보고”를 한 후, 재승인을 받아 다음 해에도 사역을 계속한다.
 통상의 경우 이런 사역은 꼭 안수 받은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이 아니므로 이런 사역자를 안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역이 안수 받은 목사가 필요한 사역이라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정기노회에서 회원 2/3의 찬성을 얻어 안수할 수 있다.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충성해야 한다.

목사후보생 (STUDENTS UNDER CARE OF PRESBYTERY)

- 9.14 목사후보생은 안수받은 목사가 되어 복음사역을 하려는 신학생들이다.
- 9.15 목사후보생이 되려면 소속교회 당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안수 받기 전 최소한 1년 이상 노회지도를 받아야 한다.
- 9.16 목사와 성역관련위원회(The Minister and His work Committee) 혹은 이에 상응하는 노회위원회는 목사후보생을 노회에 소개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시험, 확인해야 한다 :

- A.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여부
 - B. 기독교인 다운 인품
 - C. 하나님이 일군으로 부르셨다는 확신
- 9.17 목사후보생이 되면, 노회회원 명부에 기록하고 상담 및 지도를 시작한다.
- A. 노회는 목사후보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학업상황, 가정형편, 재정형편 및 영적문제 등에 관해 상담한다.
 - B. 노회는 목사후보생에게 노회의 모든 업무내용을 알려준다.
 - C. 목사후보생의 안수받는 절차들을 도와준다.
- 9.18 목사후보생은 :
- A. 노회모임과 총회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B. 노회지도를 따라, 노회에서 설교검증을 받아야 한다.
 - C. 필요한 일이 있거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노회의 목사후보생 담당 부서를 통해 노회에 연락해야 한다.
 - D.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에서 설교할 기회를 갖게 돼야 한다.
- 9.19 목사후보생의 노회회원명단삭제 :
- 본인이 요청할 경우, 노회는 그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본인의 요청이 없어도, 목사후보생이 되고 5년이 지난 후, 본인이 서면으로 연장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본인이 서면으로 연장요청을 한 경우, 노회의 목사후보생 담당부서는 목사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노회에 보고한다.
- 9.20 목사후보생은 노회공식석상에서 아래의 서약을 해야 한다.

- (1)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앙과 일치한 성도다운 인품을 유지하며 목표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 (2) 귀하는 목표한 말씀사역준비에 관해 노회의 지도와 지시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 9.21 확실히 “네”라고 서약을 마치면, 노회장이나 노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후보생에게 간단히 권면을 한 후, 절차를 마친다.

강도사 임명절차 (PROCEDURES FOR LICENSURE)

- 9.22 교회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 자격없는 사람이 목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격없는 사람의 지도와 감독 아래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사 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이를 위해, 노회는 후보생을 강도사로 임명하여,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는 기회를 갖고 수습설교자(강도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후, 강도사가 성숙한 설교자가 되고, 여러 교회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고가 있을 때, 노회는 목사로 안수한다.
- 9.23 규정에 따라, 신학과과정 3년을 이수하지 않고는 강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강도사가 되는 자격조건이며, 신학교 재학 중이라도 노회가 허락하는 경우에 설교는 할 수 있다.

9.24 강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신학교로부터 학위를 받은 사람이든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든 아래와 같이 노회고시를 거쳐야 한다 :

- A. 설교검증 : 강도사로 임명받기 위해 노회석상에서 설교해야 한다.
- B. 설교 후, 노회는 설교를 검증하며, 회원들에게 설교를 논평할 기회를 준다.
- C. 설교가 부족하면 노회는 불합격결정을 내리고, 그 상태를 전체적 부족 혹은 부분적 부족으로 분류, 필요시 노회가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다시 공부할 것을 명한다.
- D. 설교를 통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목사의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정중히 다른 사역의 길을 가도록 권유한다.
- E. 노회석상에서 건전한 신앙여부와 특별히 ARPC 교단의 교리, 규례 등을 믿고 따를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 F.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노회석상에서 아래 서약문을 따라 서약한다.

- (1) 귀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위1체 한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의 구주이시라는 것과 몸된 교회의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합니까?
- (2) 귀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으며, 원본 성경역시 오류가 없음을 믿고 동의합니까?

- (3)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기술된 교회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동시에 귀하 자신의 믿음이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까?
- (4) 귀하는 ARPC 교단의 정치, 권징조례, 모범예배를 따를 것임을 약속합니까?
- (5) 귀하는 사랑 안에서 총회소속인 노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화합, 평화 및 부흥을 위해 열심할 것을 약속합니까?
- (6) 귀하는 가정에서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를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까?
- (7) 귀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열심으로 귀하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약속합니까?

G. 서약을 마치면 노회장은 그 사람이 노회의 승인을 받아 강도사로 성역을 하게 됐음을 선포하고, 그가 이제 시작하는 사역의 중요성, 어려운 점, 그러나 얼마나 보람된 사역인지를 간단히 상기시키며, 성실과 열심히 사역에 헌신할 것을 권면한다. 강도사는 안수받을 때까지 소속교회의 교인으로 있게 된다.

- H. 강도사에게 노회장과 서기가 서명한 강도사자격증을 수여 한다.
- I. 강도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서면요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서면요청은 강도사 관리부서 (Committee 나 Commission) 가 검토 후, 노회에 연장여부를 건의한다.
- J. 강도사는 소속 된 노회의 지도 및 관리 하에 사역한다. 노회는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그의 상황과 적성에 합당한 사역을 정해 주도록 한다. 본인이 원하는 사역이 있는 경우라도 그보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K. 강도사는 소속 노회의 모임과 총회 모임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참석하여 본인의 사역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잘 숙고하고 조언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L. 강도사는 목사가 아니므로 성례집례, 축도, 결혼집례, 직분자 안수를 행할 수 없으며, 당회, 노회, 총회 (Church Court) 의 의장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 총회에서 투표권도 없다.

목사 안수절차

- 9.25 후보생이 총회와 소속 노회가 정한 목사학력자격과정을 다 마치면, 노회는 목사안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안수를 위해서는 목사학력자격과정 외에도 다음 요건을 필요로 한다 :

- A. 후보자 본인의 신앙체험의 검증
 - B. 영어성경 지식에 대한 검증
 - C. 신학수준과 교리에 대한 입장 검증
 - D. 천주교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여부, ARPC 교단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완전한 지식여부 검증, 그리고 ARPC의 정치, 권징, 예배모범에 대해 확실히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 E. 노회공석상에서 설교(원고설교)하며, 설교 후 노회로부터 평가(건설적목적을 위한)를 받는다. 설교는 노회가 지정 하거나, 노회가 허락하는 본문으로 한다.
 - F. 노회소속 교회로 부터의 청빙이나 노회가 인정하는 기타 목회사역기관으로 부터의 청빙이 있어야 한다.
- 9.26 노회는 목사고시시행 요강을 제정,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시행요강 중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회는 모든 영역에 걸친 광범위 한 필기시험을 먼저 행한 후, 다음 고시부 (Committee)와 노회석상에서 구두시험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 9.27 노회원 1/4 이상이 고시합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회는 재시험(필기)문제를 준비하여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재 시험에 사용한 모든 문제와 답안은 노회록에 첨부돼야 한다.
- 9.28 시험에 합격하고 청빙서가 있는 경우, 노회는 안수일자와 장소를 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안수식은 청빙받은 교회에서 안수를 위해 모이는 임시노회에서 시행한다.

- 9.29 정해진 안수일자에 노회개회를 한 후, 설교를 맡은 목사는 안수식에 적합한 설교를 한다. 사회자는 안수를 위해 노회와 안수후보자가 거친 모든 안수과정을 설명, 소개하며, 또한 안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예식의 준엄성을 인식시킨다.
- 9.30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안수서약을 행한다.
- (1) 귀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위1체 한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의 구주이시라는 것과 몸된 교회의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합니까?
 - (2) 귀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으며, 원본 성경역시 오류가 없음을 믿고 동의합니까?
 - (3)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기술된 교회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동시에 귀하 자신의 믿음이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까?
 - (4) 귀하는 ARPC 교단의 정치, 권징조례, 모범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이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 (5) 귀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산하인 노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하나 됨, 화평, 순결,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까?

- (6) 귀하는 가정에서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룰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까?
 - (7) 귀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열심으로 귀하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약속합니까?
 - (8) 귀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성경의 순수함과 명백함을 그대로 설교할 것과 열심과 성실을 다해 목회업무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까?
- 9.31 위의 서약확인이 끝나면, 노회는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로 안수한다.
 - 9.32 안수기도 후, 노회원들은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환영, 격려한다.
 - 9.33 교회사역 아닌, 다른 분야의 사역을 위해 목사로 안수 받는 경우, 사회자는 이를 알리며, 이제 시작하는 그 사역의 중요성, 어려움, 탁월성을 강조한다.
 - 9.34 안수 후, 노회장과 서기가 서명한 안수증을 수여한다.
 - 9.35 노회는 안수예식의 모든 절차를 노회록에 기록하며, 그 사본을 안수받은 목사가 속해 있던 교회에 발송하여, 그 교회가 교인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게 한다.

위임(취임)절차

- 9.36 목사는 자신이 사역할 교회가 속한 노회의 회원이 되며, 위임(취임)하기 전에 노회의 모든 절차를 거친, 청빙서를 노회로부터 받는다.
- 9.37 위임(취임)예식은 노회 혹은 예식을 담당한 위원회에 의해서 시행된다. 예식의 완전보고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노회록에 기재된다.
- 9.38 목사는 한 교회 혹은 한 개 교회 이상의 교회의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가 될 수 있다. 그 절차는 청빙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진행 된다. (한 교회로부터 받은 청빙서인지, 두 교회로부터 받은 청빙서인지에 따라)
- 9.39 새로 안수 받고 담임목사가 되는 경우라, 안수식과 위임(취임) 예식을 동시에 할 때는, 먼저 목사안수 서약을 하며, 그 다음 위임(취임)서약을 한다.
- 9.40 위임(취임)하는 사람이 이미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 안수 받을 때 서약한 안수서약을 다시 한번 서약한 후, 아래의 위임(취임) 서약을 한다.
- (1) 귀하는 이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 부목사의 모든 사명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 (2) 귀하는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산을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서약합니까?

- 9.41 서약 후, 교인들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000씨를 여러분의 목사로 인정, 수락하며, 청빙서에 약속한 내용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과 순종과 격려로서 목사의 사역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까?”
- 9.42 교인들의 기립 서약 후,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위대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00씨가 ARPC 00 노회, 000 교회의 목사로 (안수 받았음을) (위임/취임)했음을 공포하노라”
- 9.43 공포 후, 노회로부터 이 예식의 순서담당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임직자와 교인들에게 각각 축사 및 권면사를 한다. 다음 축도가 끝나면 교인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목사됨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안수 받은 목사에게 오른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
- 9.44 노회가 승인한 기타 사역(교회 사역이 아닌)을 위한 목사 안수식 절차도 이와 유사하다.
- 9.45 노회는 교회로부터 받은 목사청빙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 때, 노회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당한 목사나 청빙한 교회는 총회에 항고할 수 있다.

목사청빙절차

- 9.46 정식으로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노회검증을 통해 승인 받지 않은 사람은 지교회의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
- 9.47 목사와 교인들(Congregation)간의 관계는 담임목사로서의 관계, 부목사로서의 관계, State Supply(일정기간 동안의 사역자로 노회가 승인한 목사)로서의 관계, Occasional Supply (어떤 사정으로 목사의 공백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로서의 관계가 있다. 어떤 경우든 노회가 승인한 신학생이나 평신도인 경우가 아니면, 모두 목사가 말아야 한다.
- 9.48 부목사의 청빙절차는 담임목사 청빙절차와 동일하다.
- 9.49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아래에 있는 절차에 따라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다.
- 9.50 노회가 주관하는 위임(취임)식을 통하지 않고는 지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으며, 해임 역시 노회 결정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9.51 부목사의 청빙서에는 부목사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와 관리 하에 사역한다. 담임목사가 사임하는 경우, 교회와 노회는 부목사의 후보 가능성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 9.52 Stated Supply는 지교회의 당회가 담임목사의 역할을 해 줄 목사를 청빙함으로 이루어진다.
- A. Stated Supply 목사는 노회가 그 개인적인 자격과 기타 사역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신중히 심사한 후, 승인한다.

- B. Stated Supply 목사의 임기는 1년 이하이며, 이후 연장할 수 있다.
 - C. 지 교회는 정식 청빙서를 만들지 않는다.
- 9.53 Occasional Supply
-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나 있어도 사정상 일시적으로 시무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지교회의 당회가 정한 목사, 신학생 혹은 평신도를 말한다.
- A. 당회는 비상시 외에는 노회 혹은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Occasional Supply를 둘 수 없다.
 - B. 노회는 비상시에 Occasional Supply 가 될 수 있는 목사, 신학생, 평신도 중 신앙의 지도자로 그 자격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명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9.54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청빙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목사청빙위원회”를 조직한다. “청빙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은 현 당회원인 장로 혹은 “Rotate System(순환제단기직분장로제)”에 의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장로로 구성해야 한다. 나머지 위원은 성숙한 신앙과 지혜를 소유하고, ARPC의 모든 행정 및 정치제도에 익숙한 성도로 구성한다.
 - B. “청빙위원회”는 후보를 찾으면, 그 이름을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당회가 승인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의 청빙허락을 받도록 한다. 이 공동의회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사회하며, 이 당회장은 또한 청빙서를 작성한다.

- C. 청빙은 만장일치 내지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일지라도 그 반대가 강력하면 그 투표를 재고해야 한다. 청빙투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 D. 후보자가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 그 공동의회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투표하지 말고, 청빙위원회는 후일 다음 공동의회에서 다른 후보들을 결정하도록 한다.
 - E.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청빙이 결정되면, 장로, 집사, 일반 성도의 순서로 청빙찬성 서명한다.
 - F. 청빙서명을 마치면 당회장이 서면청빙서를 작성함으로써 청빙이 확정된다.
 - G. 서명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 노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청빙서는 노회가 모든 청빙조건의 충족여부를 살피고 승인할 때 까지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 H. 청빙서는,
 - (1) 정확한 목사의 사례비와 기타 지급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 (2) 사택비, 휴가, 이사비용, 건강보험 (의료 및 입원) 을 기재해야 한다.
 - (3) 교회가 목사의 아래 기술 된 은퇴연금에 대한 재정지출을 책임진다는 것을 기술해야 한다.
- * 미국 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경우 :
ARPC 총회의 은퇴연금 Plan (총회로 지출한다).
- * 미국 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경우 :
미국 외에 있지만 총회가 승인한 규정과 기준에 일치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경우, 그 지역에서 공인 된 은퇴연금 Plan 이며 노회가 승인한 Plan 에 대한 재정적책임. (이런 경우라도 새로운 사역분야나 교회가 재정부담을 할 수 없을 때는 예외가 된다.)

- (4) 목사에 대한 대우조건들을 매년 당회에서 재조정한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 (5) 노회승인 전까지 모든 청빙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6) 교회 소속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를 통해서 청빙목사가 받도록 해야 한다.

[1년 동안 ARPC 은퇴 Plan 가입금을 내지 않으면, 총회은금부는 해당목사, 당회서기, 노회서기 그리고 노회 은퇴 Plan 담당부서의 Chariman 에게 청빙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고, 통지일로부터 1년 후에도 계속 가입금을 내지 않으면, 은퇴연금은 무효가 된다.]

- I. 다른 노회에 소속된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 청빙받은 목사의 소속노회로 부터 청빙하는 교회가 속한 노회로 이명서가 전달 돼야 한다.

- J. 청빙받은 목사가 청빙을 수락하면, 노회는 위임(취임)예식을 담당할 위원회를 조직한다.
- K. 여러 면에서 청빙에 하자가 없을지라도 노회가 ARPC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청빙서 전달을 거부할 수 있다.
- L. 개척교회의 담임으로 사역하는 목사는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어 그 예식을 행할 때,
 - * 예식을 행하기 전, 임시노회㉔에서 담임목사로 청빙받았고,
 - * 노회나 노회의 담당부서(목사 및 목사의 사역 담당)가 제반청빙조건을 승인한 경우, 그 예식에서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
- M. 기타 분야(교회 사역 이외)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청빙절차도 이와 유사하다.
- N. 년 예산조정으로 청빙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 년 중 첫 번째 노회에서 승인받도록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목사의 사임 및 해임 절차

- 9.55. 목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노회의 업무이며, 목사, 당회, 교인들 혹은 노회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 9.56. 목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A. 목사는 당회에 서면으로 사임의사를 통보하며, 그 사본을 노회에 보낸다.
 - B. 통보받은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한다.

㉔ ARPC의 행사(안수, 교회설립 등)는 노회에서 그 행사를 위해 담당을 임명 한 후, 임시노회의 형식으로 행사를 행한다.

- 9.57 당회가 목사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A. 당회는 먼저목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후, 사본을 노회에 보낸다.
B. 당회는 이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처리한다.
- 9.58 교인들이 목사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A. 세례 교인들은 서면으로 목사사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요청한다.
B. 당회는 이 요청이 합당한지를 살펴 결정한다.
C. 당회가 이 요청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면, 공동의회를 소집, 이를 처리한다.
D. 당회는 목사 사임에 대해 해당목사와 노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 9.59 교인들이 목사해임 절차를 결정할 때,
A. 이를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B. 교인들이 목사해임에 찬성한 경우,
이것이 교인들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해당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노회는 목사를 해임 한다.
C. 교인들이 목사해임에 반대한 경우,
교인들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교인들의 반대사유와 당회의 요청서를 모두 신중히 살핀 후, 양쪽의 사유가 다르면, 노회는 교인들과 해당목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9.60 노회가 목사해임을 원하는 경우,
노회가 확실한 증거에 의해, 목사해임이 교인들과 해당목사
양쪽에 모두 유익하다고 판단 되면, 양쪽(교인들과 목사)
중 어느 쪽의 청원이 없어도 해당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있다.
- 9.61 노회는 목사에게 다른 사역(사역지)을 권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다. 노회의 권고를 받은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지 기도해야 한다.

다른 노회로 부터의 이명 절차

- 9.62 ARPC 의 타 노회로부터의 이명 절차
- A. 노회는 목사나 신학생의 한 노회로부터 다른 노회로의
이명에 관한 행정권을 갖고 있다. 목사, 강도사, 신학
생이 다른 노회로의 이명을 원하면 이를 노회에 보고하
고 노회로부터 “A Letter of Standing”(노회의 무흠회
원이란 증명서)를 받아, 이명받는 노회에서 이명심사
를 받기 전에 그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 B. 이명 받는 노회는 이명 오는 목사의 신앙, 신앙인으로
서의 자질, 목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후, 노회는 이명을 거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더 준비 될 때까지 이명허락을 연기할
수 있다. 노회는 모든 목사가 다 동일한 이명시험 절차
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 C. 이명 가는 목사는 소속노회로부터 무흠 회원임을 증명하는 이명서를 받아, 새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명서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한 이후에만 발급된다. 이명 가는 새 노회가 공식적으로 영입하고, 이전 소속 노회에 공식통지서를 보낼 때까지는 아직 이전 노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다.
- D. 노회는 이명서의 날짜와 기타 중요한 사항을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9.63 다른 교단으로부터의 이명 절차

- A. 목사가 다른 교단으로부터 이명오는 절차는 실제로는 ARPC의 한 노회로부터 다른 노회로 이명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 B. 이명을 원하는 목사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나 기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이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C. 이명을 신청한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 자질 그리고 ARPC의 교리와 규정에 대한 지식정도 및 충실히 지키고 따를지를 심사받는다.

- 9.64 타 교단으로부터 이명신청을 한 목사는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학력은 "FOG Chapter 9.3.G"(정치 9장3조 G항) 규정에 따라 ARPC 의 노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관리 및 훈련기준과 같은 수준이라야 한다.
- 9.65 타 교단으로의 이명.
목사를 타 교단으로 이명 보내는 절차는 실제로는 ARPC 내의 한 노회로부터 다른 노회로 이명 보내는 절차와 동일하다.

기타 사역(교회의 목사로서의 사역 이외)을 위한 청빙

- 9.66 이 경우의 청빙절차도 기본적으로는 교회사역을 위한 청빙절차와 동일하다. 청빙하는 청빙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목사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당 목사의 소속 노회로 해당사역에 적합한 청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 9.67 목사가 ARPC 내의 기관이나 단체 이외의 사역청빙을 원하는 경우 :
- A. 소속노회에 허락청원을 해야 한다.
 - B. 노회는 이 사역이 ARPC 와 청원하는 목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허락한다.
 - C. 노회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목사가 계속 그 사역하기를 원하면, 견책이란 징계 없이 그 직위를 반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D. 목사가 이 요청 없이 그 사역을 하는 경우, 노회는 안수서약 위반으로 기소하며, 사법부는 이를 처리한다.

제 10 장 노 회

노회의 필요성

- 10.1 ARPC 교회의 당회 바로 위에 있는 상위기관은 노회이다. 노회는 총회가 설정한 노회지역 내의 교회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교세가 커짐에 따라, 노회지역 밖에 교회, 혹은 예배처나 설교를 위한 시설, 특정민족사역, 아직 미조직 상태인 개척교회(Mission congregation) 같은 조직을 세워야 할 경우가 생긴다. 노회는 장로정치 체제에서 노회 전반적인 모든 행정을 관장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노회제반 규칙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조직된 교회의 상위기관임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노회의 명칭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성경적이다.

노회의 권한과 책임

- 10.2 노회가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노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총회 내에서, 온 세상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계획(프로그램)을 시작, 기획, 조직, 집행하는 것이다.
- 10.3 노회는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상급치리회로서 법적명령을 집행
 - B. 교리나 권징에 관한 질의, 상소나 고소건 등을 헌법절차에 따라 접수, 청문, 해결, 해석한다.

- C. 노회는 지교회의 당회권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자문하거나 1차사법권을 행사하여 해결한다.
- D. 당회록을 검사한 후, 잘 된 것은 승인하고 잘못 된것은 반송하여 잘못 된 부분, 절차나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 하고, 성실히 ARPC Standards 를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 E. 교회의 합병, 분리, 조직, 해체, 영입, 해산 및 이명을 주관한다.
- F. 해체 된 교회재산의 유지, 처분, 사용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 G. 노회 산하 지교회들의 부동산 구입, 매각, 용자 혹은 대여를 허락하거나 거절 할 수 있다.
- H. 노회 산하 지교회들의 형편을 살펴 시정하거나 권면하며 특별히 목사가 없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임명하고, 설교자를 보내며 예배에 관한 모든 규례와 절차를 지도한다.
- I. 노회소속 신학생을 목사후보생으로 받는다.
- J. 목사후보생고시를 행한 후, 승인한다.
- K. 말씀사역자인 목사의 안수, 취임(위임), 면직, 명단삭제, 재판하며, 맡은 성역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시 견책한다.

- L. 청빙서의 제반사항을 살펴 허락여부를 결정하며 청빙 조건을 수정한다.
- M. 목사나 교회 한 쪽 혹은 양 쪽의 요청에 의해 목사의 사임 문제를 처리하며, 또는 노회가 노회의 판단으로 목사를 사임, 해임 시킬 수 있다.
- N. 무임목사의 사역 관계를 관리, 지도 한다.
- O. 노회 지역 내에서의 전도 및 교회개척 계획을 세우며 지도 한다.
- P. 사역에 필요한 기관을 조직, 관리하며 노회 지역 내에서 ARPC 교단성장을 위한 방안에 함께 협력한다.
- Q. 현 ARPC 의 교리와 정치를 바꾸기 위해 총회가 만든 모든 수정제안을 검토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 R. ARPC 전체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현의한다.
- S. 노회소속 교회들의 영적유익을 위한 그리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0.4 노회는 :

- A. 모든 노회업무진행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이를 매년 총회에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 B. 아래 사항을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
 - (1) 신학생 영입
 - (2) 목사의 안수, 취임(위임) 및 사임(해임)
 - (3) 교회의 설립, 조직(당회), 해체, 합병, 분리 그리고 총회 내의 타 노회로부터 이명 받은 교회와 총회 내의 다른 노회로 이명한 교회명단

- (4) 새로 안수 받은 장로와 전입된 장로 명단
 - (5) 사망한 목사, 장로, 집사 명단
 - (6) 노회 소속 교회들에 관해 총회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전입 및 전출교인, 사망교인 상황, 그리고 총회 기관의 멤버가 된 교인을 보고하며, 재정 상황 보고를 한다.
 - (7) 노회 지역 내의 형편과 사역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 (8) 일년 사이에 시행된 모든 중요 사업과 변경을 보고한다.
- D. 회원 목사의 요청시 목사의 소속(신분) 증명을 발급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년이다.

노회구성 및 조직

노회의 필요성

- 10.5 노회치리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A. 노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 중인 모든 목사와 은퇴목사
 - B. 해외에서 Full Time 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노회나 기타 ARPC 교단 내의 각 부서나 기관에서 Full Time 으로 사역하는 목사 및 이들 사역을 마치고 은퇴 한 은퇴목사
 - C. 노회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하는 목사
 - D. 현 군목 및 은퇴군목

- E. 상기의 사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년 노회의 허락을 받고 목사 안수 및 청빙시의 사역조건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목사는 FOG 9.13에 따라 맡은 성역에 성실하게 헌신하고 있음을 매년 노회에 보고, 서면신청서를 제출한다.
- 10.6 노회 소속 지 교회들로 부터 최소 1명의 장로.
- 10.7 세례교인 300명 이상의 교회는 2명의 장로총대를 노회원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후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노회 서기는 노회구성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총회서기에게 보고한다.
- 10.8 장로가 부노회장이 되는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노회장이 장로라야 한다.
- 10.9 장로 노회원의 임기는 소속교회의 당회가 후임장로를 선출,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때 까지이다.
- A. 투표권은 직접 노회회의에 참석한 노회원에게만 있다.
- B. 노회회의에 다른 노회나 다른 교단 소속의 무흠회원인 목사들이 참석한 경우, 노회는 조언이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 10.10 노회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및 그 외에 필요한 직분으로 구성된다.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노회가 정한다.

- 10.11 노회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노회모임을 가져야 한다. 정기 노회는 물러나는 노회장이나 신임노회장의 설교로 개회되는데, 장로가 노회장인 경우는 노회장이 지명한 노회소속 목사의 개회사나 설교로 개회되며,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 A. 노회 회의정족수 :
목사회원 1/3 과 노회소속 회원교회 중 1/3 의 교회로부터 선출 된 장로가 회의 정족수이며, 노회는 은퇴목사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B. 총회 모임 중, 총회가 정회를 하면 노회는 노회로 모임 수 있는데, 시간은 총회 정회 시간 동안으로 제한된다.
- 10.12 다음 정기노회 때 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안건이 발생한 경우, 노회장은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장 유고 시에는 서기나 3인 이상의 노회원의 요청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인 이상의 노회원은 2개 교회 이상에 속한 회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회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회의 안건을 최소 1주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시노회에서는 통보한 안건 이외 다른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
- 임시노회회의 정족수는 목사회원 2인과 2개 이상의 회원 교회들로부터 선출 된 장로들로 구성된다.

- 10.13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노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총회가 지시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 10.14 노회 혹은 노회의 부서나 기관들은 소재하고 있는 주의 법을 따라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그 법인체의 규정과 정관은 반드시 ARPC 교단의 정치규정(FOG)을 따라야 한다.
- A. 설립된 법인의 직원은 노회회원이나 해당 부서 혹은 해당기관에 속한 회원으로 한다.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나 재산관리위원 그리고 직원은 설립된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 B. 노회 혹은 노회의 부서나 기관들이 법인체가 아닌 경우, 소속 회원들 중에서 재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 C. 법인체로 되어 있던, 비법인체의 형태로 되어 있던, 노회, 해당부서, 해당기관들이 재산의 소유권과 등기권을 갖는다.
 - D. 노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등기문서는 노회 명의로 되어야 하며, 재산에 대해 용자를 얻거나 계속 소유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노회가 한다.
 - E. 노회가 노회소유의 재산양도처리 없이 해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노회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총회나 총회가 승인한 기관으로 이전 양도된다. 이 경우 재산을 소유했던 노회에게는 더 이상 이 재산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이 없다.

제 11 장 미 조 직(개척) 교 회

미조직(개척)교회의 정의

- 11.1 미조직교회는 ARPC 의 조직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갖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이다. 조직교회와 다른 점은 조직교회의 정치는 교회 자체의 당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미조직교회의 정치는 노회가 조직해 준 임시당회(Provisional Session)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조직교회의 목표

- 11.2 일정지역 내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고, 목회양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체 당회를 갖춘 조직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미조직교회의 설립

- 11.3 교세가 확장 됨에 따라 노회들이 노회지역을 넘어서 교회, 소예배처, 설교할 장소, 이민족사역체 혹은 Mission Congregation 을 세워야 될 때가 있다.
- 11.4 노회는 예배, 교제, 사역 그리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Mission Status 를 승인한다.
- 11.5 어떤 교회가 후원교회가 되어 여러 사람이 모여 예배하도록 후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모임은 후원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후원교회는 이를 소속노회에 알려야 한다.

- 11.6 노회의 절차를 따라 당회가 조직되고 당회책임자들이 선출될 때까지 노회는 :
- A. 미조직교회가 상기 11.5 에 해당하는 경우, 후원교회로 하여금 노회 대신 그 교회를 살필 수 있도록 임시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 B. 해당 미조직교회의 이웃 교회 장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아니면 ARPC 의 규정³⁷에 따라 자격 있는 장로를 이용해서 임시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 C. 그 다음, 안수 받은 목사를 당회장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 D. 안수 받은 목사를 청빙하여 교회개척사명을 맡긴다. 청빙은 하단에 명기된 규정³⁸ 대로 특별한 상황의 교회를 위한 청빙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노회는 개척 담당목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후원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
- 11.7 노회나 후원교회 중 하나가 미조직개척교회 관리우선권을 갖는다. 미조직개척교회가 노회 관리 하에 있게 되는 경우, 노회의 개척교회 담당부서가 책임부서가 된다.

사전조사

- 11.8 개척교회를 세우기 전에, 노회는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까지 이다. (연장도 가능하다) 노회 허락 시, 사전조사 과정도 교회개척 사역과정으로 인정된다.

³⁷ 정 치(fOG), 6.1-6.4

³⁸ 정 치(FOG), 9.46-9.53

교인명부

- 11.9 개척교회는 교인명부를 유지해야 하며, 교인명부에는 성찬 참여교인, 아닌 교인, 세례 받는 교인, 결혼한 교인 및 사망한 교인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이 명부를 나중에 자체 당회를 갖는 조직교회가 될 때까지 노회와 후원교회 대신 보관한다.

개척교회의 재산

- 11.10 개척교회
- A. 개척교회 소유부동산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관할 노회가 소유하며, 용자, 유지, 이전 등을 관리한다.
 - B. 교회부동산 등기를 언제, 지 교회에 양도할지는 노회가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교회가 조직교회가 된 이후, 2년 내에 한다.
 - C. 조직교회가 된 후, 다시 미조직교회 상태가 되면, 12개월 이내에 모든 교회재산 등기를 노회로 이전한다.

개척교회 운영체제

임시당회

- 11.11 교회개척은 과도기단계의 사역이므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노회는 임시당회를 세워야 한다. 임시당회는 :
 - A. 노회를 대신하여 개척교회를 관리한다.
 - B. 노회 내의 개척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보고한다.
- 11.12 노회는 해당 미조직교회의 이웃 교회 장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아니면 ARPC 의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장로를 이용해서 임시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 11.13 ARPC 교단의 조직교회가 후원교회이면, 후원교회의 당회가 개척교회의 임시당회가 되어 그 사역을 관리하거나 후원교회 당회 내 부서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 11.14 임시당회의 책임은 정규당회가 갖는 책임과 동일하나 개척교회가 자체당회를 갖춘 자립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임시당회는 임시기구이다.
- 11.15 임시당회는 2차 관리기관이며 노회담당 부서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임시당회원인 장로들은 개척교회가 확실한 정체성을 세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1.16 개척교회의 목사는 임시당회의 당회장이 된다.

임무

- A.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이전부터 믿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확인시켜 세례교인이 되게 하며, 이 외 이명 온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받는다.

- B. 세례교인 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유아세례 받도록 권유한다.
- C. 무함교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이명서를 발급한다.
- D. 범죄한 교인이 있을 때, 권징조례에 따라 권면, 견책, 정직, 수찬정지 등으로 징계한다.
- E. 장로나 집사 될 만한 사람을 교육하고 시험한다.
- F. 당회와 상의하여 설교시간, 장소 등을 정하며, 성찬위원 선정 및 기타 신앙관계 행사를 상의한다.
- G. 교회가 노회 및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H. 개척사역을 맡은 목사와 당회간의 상호신뢰는 중요하다. 개척담당 목사는 당회를 강력한 후원자로 여겨, 자신의 관심사항과 어려운 점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당회는 사역에 대한 개척담당 목사의 관심사항과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역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조언하도록 한다.
- I. 임시당회 회원인 모든 장로들은 최소 월 1회 이상 사역현장을 방문한다.
- J. 사역지가 먼 경우, 노회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최선의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교회개혁 담당 목사

- 11.17 노회는 교회개혁을 담당할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교회개혁업무를 맡은 노회 내 담당부서가 공천부가 되어 후보를 노회에 추천하여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청빙조건을 노회에 제시해야 한다.
- 11.18 노회는 안수받은 목사에게 청빙서를 발급하여 교회개혁목사가 되도록 한다. 이 절차는 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공적 사역 임무

- A.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한다.
- B. 성경을 읽는다.
- C. 설교를 한다.
- D. 교육, 훈계, 권면, 위로한다.
- E. 성례를 집행한다.
- F.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
- G. 결혼과 장례를 인도한다.
- H. 장로들과 함께 정치, 권징, 예배,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돌본다.
- I. 교회의 모든 부서 자문위원이 된다.
- J. 장로들과 함께 상회(노회, 총회)를 섬긴다.

개별적으로 교인 돌보기 임무

- A. 교인들의 목사로서 심방하고, 영적인 일들을 상담, 지도하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도한다.

- B. 특별히 병든 교인, 고난 중에 있는 교인, 노인들을 심방하며;
- C.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 준다.
- D. 비기독교인 다운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과 성도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인 의무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책망한다.
- E. 이밖에 교인들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살피고 지도한다.

전도사역자

- 11.19 노회는 자체계획에 의해 혹은 총회 ONA(전도국) 요청에 의해 전도사역자를 청빙할 수 있다.
- 11.20 교회개척, 교회부흥, 전도사명을 맡은 노회 내 담당부서가 공천부가 되어 후보를 노회에 추천하여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청빙조건을 노회에 제시해야 한다.
- 11.21 노회가 노회 구역 밖에서 사역할 전도자를 청빙하는 경우에는 필히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회 내 담당부서와 총회 ONA(전도국) 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 11.22 노회는 전도사역자에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권한을 어느 기간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인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임무

노회는 전도사역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최우선으로 성실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A. 당회의 관리 없이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도록 한다.
- B. 특별한 경우, 전도사역자가 교인을 시험, 영입,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
- C. 장로나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시험하도록 한다.
- D. 노회 구역 내에서 새 개척교회를 세우는 준비를 하도록 한다.
- E. 노회 구역 밖에서의 사역인 경우는 그 지역 노회의 승인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역을 진행하도록 한다.
- F. 담임목사를 모실 형편이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목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G. 부지런히 설교역량을 개발하여 노회나 지도받는 목사의 감독, 지도 하에 특별한 전도 사역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한다.

미조직교회로부터 조직교회로의 전환

- 11.23 ONA 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 11.24 그 교회의 개척목사로 사역 중인 목사가 조직교회설립예배를 하기 전에 모인 임시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고, 노회나 목회자 및 목회사역을 맡은 위원회가 이 청빙을 승인하는 경우, 그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

제 12 장 총 회

총회의 필요성

- 12.1 총회는 ARPC 교단의 최고치리회이며 교단소속 모든 노회를 대표한다. 그 명칭은 “ARPC(The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총회”이며, 총회산하 모든 교회들과 치리회 간에 단결, 평화 그리고 소통을 이루어 간다.³⁹
- 12.2 총회는 ARPC 교단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 여러 부서들(Board, Commission, Committee)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12.3 총회의 주된 임무는 교회, 노회, 총회, 나아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직을 이루고 시행, 관리하는 것이다.

구성과 조직

- 12.4 총회는 최소 년 1회 모임을 갖는다.
- 12.5 총회조직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ARPC 교단의 교회에서
- A. 현재 사역 중인 목사들과 은퇴목사들:
 - B. 해외에서 Full Time 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노회나 기타 ARPC 교단 내의 각 부서나 기관에서 Full Time 으로 사역하는 목사 및 이들 사역을 마치고 은퇴 한 은퇴목사

³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 C. 노회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하는 목사
 - D. 현 군목 및 은퇴군목
 - E. 자신의 직분이 청빙, 안수 받은 사역을 행하기에 합당한 직분으로 여기는 목사는 FOG 9.13에 따라 맡은 성역에 성실하게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사역여부를 소속노회의 투표를 거쳐 총회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
- 12.6 총회 총회장을 역임한 모든 장로들로서 현재까지 ARPC의 세례교인인 사람들과 현 부총회장은 총회기관에 속한다.
 - 12.7 모든 교회들은 최소 1명의 장로를 총회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 12.8 세례교인 300명 이상의 교회는 2명의 장로총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후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노회서기는 노회 추천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총회서기에게 보고한다.
 - 12.9 총회모임은 직전 총회모임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 총회장은 다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다. 변경내용은 총회 30일 이전까지 각 노회에 통지돼야 한다.

- 12.10 긴급상황이나 중대사항 발생시, 총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개 이상 노회가 정식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하거나 총회장이 직접 3개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A. 임시총회소집 통지서는 30일 이전까지 보내야 한다.
 - B. 통지서에는 회의 안건을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안건 외에는 다른 안건을 다룰 수 없다.
 - C. 회의 안건은 회의 14일 전까지 모든 목사들과 당회에 배부해야 한다.
 - D. 임시총회 등록절차는 정기총회등록절차와 같다.
- 12.11 총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 A. 총회장
 - B. 부총회장
 - C. 서기
 - D. 회록서기
 - E. 출납회계
 - F. 부서기
 - G. 총회 재무담당회계
 - H. 총회역사 담당
 - I. Parliamentarian
- (Parliamentarian 이란 경험 많은 국회의원을 말하며, 이처럼 회무 진행이 흔들림 없이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12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례를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임원들의 임기에 시차를 두어 동시에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12.13 회의정족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사회원 수: 총회 산하 3개 이상 노회에서 참석하는
 목사회원 4분지 1 이상과
 장로회원 수: 총회 산하 교회 4분지 이상의 교회에서 참
 석하는 장로들 (이 교회의 숫자들은 3개 이
 상 노회의 교회들이라야 한다.)
- 12.14 교회의 대표로 참석하는 장로는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서명
 한 대표증명서를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대
 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다. 총회서기의 확인을 받지 않고
 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의에 직접 참석
 한 장로들만 투표권을 갖는다.
- 12.15 총회 날, 퇴임하는 총회장이 목사이면 설교로, 장로인 경우
 는 적절한 개회사로 회의를 시작 한후, 신임총회장 인사소
 개 까지 회의를 인도한다. 퇴임총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임부총회장이 대신 한다.
- 12.16 모든 총회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총회의
 모든 회무가 끝나고 폐회결의가 되면, 총회장이 다음 총회
 는 0000년 00월 00일이라고 공포한 다음 찬송을 하며,
 그 후, 총회장의 기도와 폐회선언 혹은 폐회선언과 축도로
 총회는 폐회된다.
- 12.17 총회는 모든 회의의 정확한 회록을 영구보관한다.

- 12.18 총회 혹은 총회의 부서나 기관들은 소재하고 있는 주의 법을 따라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그 법인체의 규정과 정관은 반드시 ARPC 교단의 정치규정(FOG)을 따라야 한다. 설립된 법인의 직원은 노회회원이나 해당 부서 혹은 해당기관에 속한 회원으로 한다.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나 재산관리위원 그리고 직원은 설립된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 12.19 총회 혹은 총회의 부서나 기관들이 법인체가 아닌 경우, 소속 회원들 중에서 재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 12.20 재산관리위원회 (법인체이든 비법인체이든) 와 상속자 :
- A. 총회나 총회 내의 부서들과 기관들에게 속한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다.
 - B.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거나 총회나 총회 부서나 기관들을 대신하여 총회를 위해 재산을 구입, 판매, 대여 혹은 용자를 한다.
 - C. 등기권리증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며, 보관, 관리한다.
 - D. 총회발전기금으로 신탁한 특별기금을 관리한다.
 - E. 재산관리에 관계된 제반업무를 총회의 지시를 따라 효율적으로 촉진한다.
- 12.21 총회 시설 등 공공재산의 등기문서는 총회 산하 담당부서나 법인 또는 기관 명의로 되며, 용자, 대여, 유지, 이전 등도 해당 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권한과 책임

- 12.22 총회는 노회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진행절차에 대해 자문한다.
- A. 총회의 발전을 위해 노회를 조직, 영입, 분리, 통합, 이전, 해산, 해체하는 일에 관해 또한
 - B. 노회록을 검사하며 필요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한다.
- 12.23 총회는 다음 활동에 대해 협력 및 조정할 권한이 있다.
- A. 현재 ARPC 교단의 노회 인근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ARPC 교단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그 교회들을 접촉한다.
 - (1) 이 교회들이 ARPC 노회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절차를 ARPC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2) 총회임원회는 가입을 신청하는 교회에게 모든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청한 후, 해당지역 노회에게 영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교회가 그 노회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3) ARPC 노회에 새로 가입한 교회는 바로 노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B. ARPC 노회 구역 밖에 있는 교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 (1) ARPC 노회가입청원은 헌법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 (2) 모든 가입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임원회는 노회에 그 교회의 노회가입을 추천한다. 그러나 이는 최종결정은 아니며, 최종결정은 총회가 노회지역 밖의 교회 가입을 허락할 때 이루어진다.
- 12.24 총회는 교단의 행정책임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ARPC 교단을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세운다;
 - B. 총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관리기관을 세운다;
 - C. 세운 계획, 규정 및 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채용한다;
 - D. 총회 산하 치리회, 기관 및 특별 부서들에게 ARPC의 교리 및 법을 준수 하도록 지시 한다;
 - E. 총회 산하 치리회, 기관 및 특별 부서들에게 어떻게 ARPC의 교리 및 법을 지키는지를 조언 및 지시한다;
 - F. ARPC 교단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Synod(종교회합)를 주최 한다.
 - G. 다른 신앙단체와의 교류는 양자 간에 맺은 협약내용을 지키며 교류한다.
 - H. 다른 신앙단체들을 영입한다.
 - I. 교단 내 모든 교회들의 평화, 순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지도하며, 교단 내의 모든 일들을 감독한다.

- 12.25 총회는 항소 및 상고 사건을 접수하여:
- A. 하급처리회에서 온 모든 사건들, 증빙서류들, 불만들이 상급처리회에서 다룰 적절한 사건들인지를 결정한다.
 - B. 하급처리회의 결정이 교단의 Standards 에 어긋나거나, 증언이나 증거가 민사법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그 행함이나 도덕적으로 잘못 된 부분이 ARPC 를 해롭게 한다면, 그 결정을 바로 잡는다.
 - C. 신앙신조 및 교리, 규정, 권징조례에 따라 모든 논쟁 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린다.
 - D. 교단의 Standard 에 따라, 교회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논쟁과 논란을 해결한다.
- 12.26 총회는 특수사역들을 관리한다.
- A. 총회는 주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효과적인 부서들을 만들거나 재편성 할 수 있으며, 이 부서들은 기존 위원회나 부서, 기관들의 관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
 - B. 이 부서들은 독립부서로서 혹은 총회의 보조기관이나 협력기구로서 활동한다.
 - C. 이 부서들은 ARPC 의 Standards 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
 - D. 이 부서들의 설치 및 활동 지침은 이 부서의 “권한과 의무 요강”을 만들어 기재해야 한다.

제 13 장

BOARDS, COMMISSIONS, AND COMMITTEES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로
명칭은 모두 위원회로 번역 될수 밖에 없음.)

BOARDS (위원회)

13.1 목적

Board 라는 위원회는 ARPC 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총회가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다. 구체적인 임무는 “권한과 임무 지침서”에 기록, 발행하거나 총회문서에 수록 되어 있다.

13.2 권한과 임무

- A. Board 는 총회가 부여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총회의 일반적인 지침은 따르지만, 특별한 지시는 받지 않는다.
- B. Board 는 주어 진 임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 계획, 관리 및 재정관리의 권한을 가지며, 임무수행과 관련 된 부동산의 등기소유권을 갖는다.
- C. Board 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독립조직을 만들고 직원을 둘 권한이 있다. 그 직책과 직무에 대한 내용을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로 하여금 총회 내 기관들의 “권한과 임무 안내서”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한다.
- D. Board 는 Board 를 임명한 상급기관에 년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년간 이루어지고 시행된 모든 업무, 새로 시작 되거나 혹은 계획 된 Program 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보고서는 상급임명기관의 “권한과 임무 안내서”에 적힌 대로 특별사명을 명기해야 한다.

- E. Board 를 임명한 상급기관은 Board 가 행하는 일을 승인, 수정 혹은 무효 처리 할 수 있다.
- F. Board 는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고 영구보존 하여 임명한 상급기관이 검토와 검사를 요청 할 때 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13.3 **인원구성과 조직**

- A. Board 의 회원임명과 임기는 임명상급기관이 정한다.
- B. 임직원은 Board에서 선출한다.
- C. Board 는 자체 헌법과 정관을 만들어 임명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D. Board 는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그 법인체의 규정과 정관은 반드시 ARPC 교단의 Standards 를 따라야 한다.

13.4 새로 선출된 Board 의 회원과 임직원 혹은 모든 Board 의 교육담당 직원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원리에 대한 신앙과 이를 준수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13.5 모든 Board 의 직원이 자신의 신앙 및 신조에 대한 믿음이 변한 경우, 이를 Board 에 보고해야 한다.

COMMISSIONS (위원회)

13.6 Commission 이라는 위원회는 지정업무를 연구, 검토, 결정하도록 ARPC 총회가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다.

13.7 권한과 임무

- A. 법적사건에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청문위원회), 특별사역을 담당할 목사를 임직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회합병을 위해서, 그 외 이런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Commission(위원회) 을 임명한 상급기관은 내부 투표의 다수결로 Commission(위원회) 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수정하거나 번복 할 수 있다.
- B. Commission(위원회) 은 임명 상급기관이 합헌성 여부를 조회하는 사항들에 대해 ARPC 의 헌법 해석, 설명,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 질 수 있다.
- C. ARPC 의 치리회에 접수 된 사법사건은 양당사자가 동의 한 경우 Commission(위원회) 의 판결로 해결 될 수 있다. Commission 의 판결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해야 한다. Commission 의 판결은 상급치리회에 항소할 수 있다.
- D. Commission 은 사건의 보안유지를 유의해야 한다.

13.8 구성과 조직

- A. 각 위원회는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
- B. 위원회는 치리회가 정한 시간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완전보고는 임명상급기관에 제출돼야 한다. 이 보고서는 임명상급기관의 회록에 포함되고 상급기관이 행한 업무로 간주된다. 이후 위원회는 해체된다.

- C.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던 사람은 치리회 회원이 된다.
- D. 위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다.
- E. 위원회의 위원 수 :
 - (1) 당회가 임명하는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소 한 사람은 목사라야 한다.
 - (2) 노회가 임명하는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2인은 목사이고 1인은 장로라야 한다.
 - (3) 노회가 임명하는 사법사건 청문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목사이고, 2인은 장로라야 한다.
 - (4) 총회가 임명하는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4인은 목사이고 3인은 장로라야 한다.

- 13.9 새로 선출된 Board 의 회원과 임직원 혹은 모든 Board 의 교육담당 직원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교리에 대한 신앙과 이를 준수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 13.10 모든 Board 의 직원이 자신의 신앙 및 신조에 대한 믿음이 변한 경우, 이를 Board 에 보고해야 한다.

COMMITTEES (위원회)

- 13.11 목적
- Committee(위원회)는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를 연구, 검토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임명상급기관이 결정한 방향과 결정대로 수행하도록 ARPC 총회나 기관들이 임명한 조직이다.
- 13.12 권한과 임무
- A. Committee(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임명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라서 수행한다.
 - B. Committee(위원회)가 보고하는 건의를 받은 임명상급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Committee(위원회)는 부여받은 지시와 명령을 수행 후, 보고서를 제출 함으로서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 D. 모든 서면보고서에는 위원장과 총무(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13.13 구성과 조직
- A. 어떤 일을 위해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지, 위원회의 인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상급기관 혹은 Board(위원회)가 결정한다.
 - B. Committees(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1) Moderator's Committees (총회장 위원회) :
총회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임시 위원회이다. 명단에 그 이름이 제일 먼저 기재된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 (2) Special Committees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치리회나 Board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나 임명할 수 있다. 총회장이나 위원장 혹은 공천부가 치리회나 Board가 승인하면 언제나 임명할 수 있다. 위원명단 중,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회의 개최를 하며,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 조직을 한다.

(3) Standing Committees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치리회나 Board 가 지정한 구체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기구이다. 상임위원회원과 그 임기는 치리회나 Board 가 정한다. Committee(위원회)는 임명상급기관의 회의 때마다 혹은 정해진 시기에 업무 보고를 한다.

- 13.14 새로 선출된 각 Committee의 회원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원리에 대한 신앙과 이를 준수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 13.15 모든 Committee 의 모든 회원은 자신의 신앙 및 신조에 대한 믿음이 변한 경우, 이를 Board 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장 규칙 개정

- 14.1 모든 Standards 개정안은 가을 정기노회에 제출되며, 다음 봄 정기노회에서 가부투표를 한다.
-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개정은 총회가 각 노회에 보내 투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총투표자의 4분의 3의 찬성을 요한다. 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투표결과를 증명한다.
- B. **정치, 권징조례, 모범예배 :**
이 3가지의 개정은 총회가 각 노회에 보내 투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총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다. 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투표결과를 증명한다.
- C. 본 14장 내용의 개정은 14.1.A 에 기재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 ” 개정 절차와 동일하다.

- 14.2 각 노회의 서기는 투표결과를 기록하여 총회서기에게 보고한다.
- 14.3 총회는 노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투표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투표절차 규정은 개정안이 하나 이상인 경우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로 투표하는지, 하나씩 투표하는지도 명시해야 한다. 가부를 물어,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 투표한다는 것도 명시한다.
- 14.4 세부설명을 위해서 개 교회들에게 현의 된 수정안을 보낼 필요는 없다.
- 14.5 회의에 참석한 본인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 14.6 투표결과가 발표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에 대한 질문이나 다시 고려하는 일은 종려된다.
- 14.7 총회는 핵심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고,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14.8 내용을 변경하는 모든 수정안은 상임개정위원회로 보내져 검토를 받는다. 위원회는 수정안이 “Form of Government”(정치)에 있는 다른 내용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 14.9 상임개정위원회의 검토는 수정안이 승인을 위해 총회 본회의 회의장에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 본회의장에서 제시된 수정안은 상임개정위원회에 보내진다.
- 14.10 수정안과 ARPC 정치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ARPC 정치의 기본원리와 이미 시행된 명령에 따라서 각 해당 치리회에서 결정한다.

14.11 ARPC 의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Robert’s Rule of Order(10번 째 인쇄본)” 에 따라 진행된다.

A

amendment to Standards	헌법수정, 14.1.B - C
and congregations	회중(교회), 14.4
Confession of Faith & Catechism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14.1.A
editing	수정편집, 14.7 - 14.8
procedures	수정절차, 14.1 - 14.6
Revision Committee	수정위원회, 14.8 - 14.9
voting 투표, 14.2 - 14.3	
voting eligibilty	투표자격, 14.5
ARP Church government	ARP 교단의 정치
Contstitution	헌법, 2.13
history	역사, 2.5 - 2.6
associate pastors	부목사
See ministers.....associate	참조 : 목사.... associate

B

baptism,	세례, 4.5.D, 6.8.D, 6.9.B, 11.9, 11.16.B
boards,	위원회 13.1 - 13.5
authority	권한, 13.2
congregational	회중(교회), 6.7
doctrinal requirements,	교리 및 신앙 준수, 13.4 - 13.5
General Synod	총회, 12.2
Officers	임직원, 13.3.B
organiztion	조직, 13.3
Presbytery,	노회, 10.3.P, 10.14
purpose	목적, 13.1

C

calling toofficers	직분에 대한 소명, 2.11, 7.5, 8.1.E
calls	소명
SEE ministers.....calls	참조. 목사. 소명 .
chapels,	예배처, 3.3, 10.1, 11.3
chaplains	기관목사, 9.12, 12.5.D
church	교회
authority	권한, 1.1
nature of	교회의 본질, 1.4 - 1.6
witness	증인, 1.7
church discipline	교회의 권징, 4.16, 10.3.B - C, 11.16.D, 12.25
church finances	교회재정
reviews	감사, 5.11
church government	교회정치
foundation	근거, 2.1
purpose	목적, 2.7
church membership	교인, 4.1, 6.8.E
associate,	준교인, 4.3, 4.8
certificate of transfer,	이명서, 4.9, 4.11 - 4.14, 11.16.C
communicant	수찬유자격교인, 4.1
joining	교인전입, 4.5
non-communicant	수찬무자격교인. 4.2
questions for joining	전입서약문, 4.5

responsibilities of	교인의 의무, 4.4
transfer of,	교인의 이명, 4.7, 4.9 - 4.14, 6.8.F
types of,	교인의 종류, 3.6
church officers	교회 직분자
age requirements,	연령 조건, 8.1.C
deacons	집사, 5.1
declaration of ordination	안수 공포, 8.20
elders,	장로, 6.1
election procedures,	선출절차, 3.24.B, 3.24.G, 8.9 - 8.14
eligibility	자격, 8.1, 8.11
emeritus status	명예직분, 8.8
examination of,	후보자심사, 8.11.C, 11.16.E
joint meetings,	연합회의, 5.19 - 5.20
nomination of	공천, 8.11
number of,	직분자 숫자, 8.2, 8.9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 및 임직, 8.14 - 8.17
ordination questions,	안수서약문, 8.11.C, 8.17
oversight,	지도, 6.8.G - H
re-election	재임직, 8.21 - 8.24
rotary and non-rotary terms,	단기 직분자 와 항존 직분자, 8.5 - 8.7
subscription to Standards,	헌법에 대한 동의 확인, 8.11.C
terms of office	직분의 임기, 8.4
training	훈련과 교육, 6.8.G, 8.3
transfer of,	직분자의 이명, 4.10, 8.22, 8.24
voting,	투표, 8.12
church offices,	교회의 여러 직분, 2.9 - 2.12
church planters	개척교회 사역자, 6.11, 9.10, 11.6.D, 11.17 - 11.22
calls,	청빙, 11.17 - 11.18, 11.20, 11.24
oversight,	지도,, 11.16.H
responsibilities,	임무, 11.18
church property,	교회 재산
<i>SEE property</i>	참조. : 재산
church staff	교회 직원, 6.8.K
church treasurers,	교회 회계
<i>SEE treasurers</i>	참조 : 회계
commissioning services,	사역자 임명, 7.6
commissions,	위원회, 13.6 - 13.9
authority,	권한, 13.7
composition,	구성, 13.i.E
congregational,	교회(회중)., 6.7
doctrinal requirements,	교리 준수, 13.9
General Synod,	총회 12.2
officers,	직분, 13.8.A
organization,	조직, 13.8
Presbytery,	노회, 10.3.P, 10.14
purpose,	목적, 13.6
quorum,	회의정족수, 13.8.D
Committees,	위원회, 13.10 - 13.13
authority,	권한, 13.11
congregational,	공동의회, 3.25.J, 6.7

doctrinal requirements,	교리 준수, 13.13
General Synod	총회, 12.2
organization,	조직, 13.12
Presbytery,	노회, 10.3.P, 10.14
purpose,	목적, 13.10
types,	종류, 13.12.B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 회의, 3.24 - 3.25, 6.8.T, 8.10, 9.56.B, 9.57B, 9.58C.
presiding officer,	사회자, 3.25.H
procedures,	절차, 3.25.J
quorum,	회의정족수, 3.25.E, 3.25.J.(2)
voting,	투표, 3.25.G
voting eligibility,	투표자격, 3.25.F, 3.25.I
congregations교회(회중)	
budget,	예산, 3.24.D
dissolving of,	해체, 3.21 - 3.23, 4.13
name of	교회 이름, 3.14
officers,	직분, 3.8 - 3.9
purpose,	목적, 3.1 - 3.2
reception	교단가입, 12.23
salaries,	인건비, 3.24.F
structure,	구성, 3.4 - 3.7
unions,	교회합병, 3.15 - 3.19
withdrawl,	교단탈퇴, 3.13
D	
deacons	집사
qualifications,	자격, 5.2 - 5.4
responsibilities,	임무, 5.5 - 5.9
deaths,	사망, 6.9.B, 11.9
diaconate	집사회
called meetings,	임시회의, 5.13
frequency of meeings,	회의 회수, 5.12
in small congregations,	작은 교회 회중, 5.21
officers,	직분, 5.10
organization,	조직, 5.10
quorum,	회의정족수 5.14
relation to session,	당회와의 관계, 5.17 - 5.21
voting,	투표, 5.15
discipline	권징조례
<i>SEE church discipline</i>	참조 : 교회 권징조례
doctrinal requirementsfor	위원회의 교리 준수. 13.4-13.5, 13.9
boards etc.,	13.13. 13.14
E	
educational programs,	교육 프로그램, 6.8.J
elders	장로
<i>SEE ALSO</i> session	참조 : 당회
counseling,	상담, 6.8.B
delegates to higher courts,	상급회 총대, 6.8.Q
qualifications,	자격, 6.2 - 6.3
relationship to congregation,	회중(교인)과의 관계, 6.4

visitation,	심방, 6.8.A
ethnic ministries,	특정민족사역. 목사, 10.1
evangelists,	복음전도자, 9.8, 11.19
responsibilities,	임무, 11.22
exploratory works,	사전조사. 11.8
<i>SEE ALSO</i> mission church	참조 : 개척교회
G	
General Synod	총회
authority,	권한, 12.2, 12.23 - 12.24
called meetings,	임시총회, 12.10 교회
church discipline,	교회권징, 12.25
composition,	구성, 12.6 - 12.8
doctrinal requirements for boards, stcl.,	위원회들의 교리준수. 기타., 13.14
elder representation,	장로총대, 12.7 - 12.8, 12.14
employees,	직원, 12.24.C
Executive Board,	운영위원회, 12.12, 12.23.A.(2), 12.23.B.(2)
frequency of meetings,	회의 회수, 12.4, 12.9
incorporation,	법인체, 12.18 - 12.20
inter-church relations,	타 신앙단체와의 교류, 12.24.G - H
officers,	직분, 12.6, 12.11 - 12.12
procedures,	절차, 12.15 - 12.17
purposes,	목적, 12.1 - 12.3
quorum,	회의정족수, 12.13
relation to Presbyteries,	노회와의 관계, 12.22
special ministries,	특수사역, 12.26
trustees,	재산관리위원회, 12.19
voting,	투표, 12.5.E, 12.8, 12.10.D
H	
Holy Spirit	성령
authority,	권한, 1.3
I	
insurance,	건강보험, 9.54.H.(2)
J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offices of,	직분, 1.2
Judicial cases,	법적 사건. 13.7, 13.8.E.(3), 13.8.E.(5)
L	
laying on of hands,	안수, 7.2, 7.6, 8.19, 9.31
licentiates	강도사
<i>SEE</i> students of theology	참조 : 신학생
M	
Manual of Authorities & duties,	권한과 책임의 규례, 12.12, 12.25.D
marriage,	결혼, 6.9.B, 11.9

members	회원
<i>SEE</i> church members	참조 : 교인
mercy ministry,	구제사역, 5.5
ministers	목사
associate,	associate 목사 9.47, 9.48, 9.51,
bi-vocational,	2개의 직업을 가진 목사, 9.11
call of,	청빙, 3.24.A
calls,	청빙, 9.46 - 9.54
- annual review,	년간 검토, 9.54.H.(4), 9.54.N
- procedures,	절차, 9.54
- terms of,	대우조건. 9.54.H, 9.54.N
calls to other ministries,	기타 사역 청빙, 9.66 - 9.67
certificates of transfer,	이명서, 9.62.C, 9.63.B
certification to vote,	투표권, 12.5.E
definition of,	정의. 9.1
dissolution of relationship,	사임 및 해임, 9.55. - 61
examination of,	자격심사, 9.62.B, 9.63.B, 10.3.K - L
installation of,	임직 9.36 - 9.45
occasional supply,	임시목사, 9.47, 9.53
ordination vow,	안수 서약, 9.30
outside the bounds,	교회 밖의 사역, 9.13
qualifications,	자격, 9.3
responsibilities of,	임무, 9.6
stated supply,	노회파송목사, 9.47, 9.52
titles,	직분명칭, 9.4
transfer of,	이명, 9.54.I, 9.62 - 9.65
minutes	회의록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 3.25.J
General Synod,	총회, 12.17
Presbytery,	노회, 9.37, 10.4.A
Presbytery,	당회, 6.9, 8.25
mission churches,	개척교회, 10.1, 10.3.O, 11.1
definition,	정의, 11.1
formation,	설립, 11.3 - 11.5
officers,	직분자, 11.6
organization,	조직, 11.23 - 11.24
oversight,	지도., 11.7
purpose,	목적, 11.2
session	당회
<i>SEE</i> session, provisional,	참조 : 당회, 임시당회
worship,	예배, 11.16.F
mission developers	교회개척자
<i>SEE</i> church planters	참조 : 교회 개척사역자
mission statements,	사역 설명서, 1.10
missionaries,	선교사, 9.9, 12.5.B
moderator's committees	노회장 위원회, 13.12.B.(1)
<i>SEE ALSO</i> committees	참조 : 위원회
O	
offerings,	헌금, 5.7, 6.8.N

ordination	안수
and calling	청빙, 7.5
charge to congregation,	교인에게 권면, 9.43
charge to pastor,	목사에게 권면, 9.43
duration of,	임기, 7.4
nature of,	성격, 7.1
services for,	안수식, 7.3, 9.29 - 9.33
vows,	서약, 9.40 - 9.41
 P	
parity of offices,	직분간의 동등한 권리, 2.10, 9.4, 9.5
pastors	목사
SEE ministers	참조 : 목사
position statements	직위 설명
SEE mission statements	참조 : 사역 설명
Presbyterian government	장로교 정치
history,	역사, 2.3
Presbytery	노회
authority,	권한, 10.2 - 10.3
called meetings,	임시노회, 10.12 - 10.13
composition of,	구성, 10.5 - 10.8
elder representation,	장로총대, 10.7, 10.9
frequency of meetings,	노회회의 회수, 10.11 - 10.13
incorporation,	법인체, 10.14
officers,	직원, 10.10
purpose of,	목적, 10.1
quorum,	회의정족수, 10.11.A, 10.12
responsibilities of,	책임, 10.4
Procedural rules,	진행에 관한 규정, 14.10 - 14.11
Profession of faith,	신앙고백, 4.5
Property	재산
congregational,	교회(회중), 3.11 - 3.13, 3.24, 5.8, 6.8.U
General Synod,	총회, 12.20 - 12.21
mission churches,	개척교회, 11.10
Presbytery,	노회, 10.3.F - G, 10.14
Provisional session	임시당회
SEE session, provisional	참조 : 당회, 임시당회
 R	
reaffirmation of faith	신앙 재고백
retirement plan,	은퇴 plan, 9.54.H.(3)
rolls	회원명부
congregational,	교회(회중), 4.5.C, 4.7.D, 4.14, 4.15 - 4.17, 6.9.B
mission churches,	개척교회, 11.9
Presbytery,	노회, 9.19, 10.4.B
rotary and non-rotary	순환단기 와 및 항존직
SEE church officers	참조 : 교회 직분자
 S	
sacraments,	성례, 6.8.C, 11.16.F

session	당회
and church property,	교회재산, 6.8.U
called meetings,	임시당회, 6.15
composition,	구성, 11.6
frequency of meetings,	당회회의 횟수, 6.15
moderator,	당회장 6.10 - 6.11, 6.14
officers,	직원, 6.12
quorum,	회의정족수, 6.17
relationship to diaconate,	집사회와의 관계, 6.8.I
relationship to higher courts,	상위치리회와의 관계, 6.8.P, 6.9.C, 8.25
responsibilities,	책임, 6.6 - 6.9
voting,	투표, 6.18
session provisional,	임시당회, 11.11 - 11.16
composition,	구성, 11.6
officers,	직원, 11.16
oversight,	지도, 11.15
responsibilities,	책임, 11.14, 11.16
special committees,	특별위원회, 13.12.B.(2)
SEE ALSO committees	참조 : 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상임위원회, 13.12.B.(3)
SEE ALSO committees	참조 : 위원회
stewardship,	관리 5.6
students of theology,	신학생, 9.14 - 9.35, 10.3.I - J
examination of,	시험, 9.16, 9.24 - 9.27
licensure,	강도사, 9.22 - 9.24
licensure terms,	강도사 유효기간, 9.24.I - L
licensure vows,	강도사 서약, 9.24.F
ordination,	안수, 9.25 - 9.35
ordination service,	안수예식, 9.28 - 9.35
ordination vows,	안수서약, 9.30
responsibilities of,	임무, 9.18, 9.24.J - L
service of reception,	임직식, 9.20 - 9.21
transfer of,	이명, 9.62.A
under care of Presbytery,	목사후보생, 9.17 - 9.18
T	
teachers,	교수, 9.7
tithing,	십일조, 5.6
treasurers,	회계, 5.10 - 5.11
trustees,	관리위원회, 2.19 - 12.20, 3.10, 10.14
V	
Licensure,	강도사 서약, 9.24.F
membership,	교인, 4.5
ordination (ministers),	안수 (목사), 9.30
ordination (officers),	안수 (직분자), 8.17
students coming under care	목사후보생, 9.20

W	
Westminster Assembly	웨스트민스터 회의,
Form of Government,	교회정치, 2.4
worship	예배
administration of,	관리, 6.8L - M